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비교

2014. 9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지 우 연구원

양 지 영 연구원

목 차

I. 서론	9
II. 우리나라의 AEO 제도	12
1. 도입 배경 및 의의	12
2. AEO 제도 개요	13
가. 공인대상	16
나. 공인기준 및 등급	17
다. 수출업자 기준 AEO 공인기준 변경 사항	23
라. 신청 준비와 절차	31
마. 혜택	33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36
III. 주요국의 AEO 제도	38
1. 세계관세기구(WCO) 국제규범	38
가. 도입 배경	38
나. 공인대상	38
다. 공인기준 및 등급	39
라. AEO 혜택	41
2. 미국	43
가. 도입 배경	43
나. 공인대상	43
다. 공인기준 및 등급	44
라. 신청준비와 절차	48

마. AEO 혜택	49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51
3. 일본	51
가. 도입 배경	51
나. 공인대상	52
다. 공인기준 및 등급	52
라. 신청준비와 절차	53
마. AEO 혜택	56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57
4. EU AEO 제도	58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58
나. 공인대상	60
다. 공인기준 및 등급	60
라. 신청준비와 절차	62
마. 혜택	63
바. 국가별 인증 현황	64
5. 중국 기업분류관리(AEO) 제도	66
가. 도입 배경	66
나. 공인대상	67
다. 공인기준 및 등급	67
라. 신청 준비와 절차	74
마. 혜택	76
IV. 국제 비교 및 결론	78
1. 국제 비교	78
가. AEO 제도의 일반현황 국제 비교	78
나. AEO 제도의 공인기준 국제 비교	82
다. AEO 제도의 혜택 국제 비교	84

2. 결론.....	86
참고문헌.....	88
부록.....	90
부록 I. EC 법령.....	90
부록 II. 우리나라 수출업체 AEO 공인 현황.....	102
부록 III. 자체평가표(S/A) 양식.....	106

표 목 차

〈표 II-1〉 AEO 관련 관세법령.....	14
〈표 II-2〉 우리나라 AEO 제도 추진 경과.....	16
〈표 II-3〉 공인대상별 필수 및 권고기준 구성.....	18
〈표 II-4〉 법규준수 세부기준.....	19
〈표 II-5〉 내부통제시스템 세부기준.....	20
〈표 II-6〉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21
〈표 II-7〉 안전관리 세부기준.....	22
〈표 II-8〉 우리나라 AEO 공인 등급.....	22
〈표 II-9〉 2.1.4 개정 전 후 비교표.....	24
〈표 II-10〉 3.2.2 개정 전 후 비교표.....	25
〈표 II-11〉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시행 현황.....	31
〈표 II-12〉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 현황.....	37
〈표 III-1〉 일본 인증기업 현황.....	58
〈표 III-2〉 EU AEO 인증유형별 업체 수(2010년 기준).....	65
〈표 III-3〉 AEO 안전표준 기준.....	70
〈표 III-4〉 신고단위의 분류.....	72
〈표 III-5〉 중국 기업분류관리 등급별 요건.....	73
〈표 IV-1〉 AEO 특징 국제 비교.....	81
〈표 IV-2〉 공인기준 국제 비교.....	82
〈표 IV-3〉 안전관련 기준 국제 비교.....	84
〈표 IV-4〉 혜택 국제 비교.....	85

그림 목차

[그림 II -1] AEO 공인 절차.....	33
[그림 III-1] 일본 AEO 인증 절차.....	54
[그림 III-2] 일본 AEO 후속 검증 절차.....	55
[그림 III-3] 중국 MCME 신청 절차.....	75

I. 서론

-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은 2002년 4월 대테러방지무역파트너십(C-TPAT)¹⁾제도를 도입하여, 무역공급망(Supply Chain)상 보안 및 안전 조치를 더욱 강화함
 - 9·11 테러 이전까지는 화물의 신속한 반출입 및 무역거래의 원활화에 중심을 두었던 세계무역의 패러다임이 무역안전과 정확성으로 변화함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무역공급망의 안보를 강조하는 미국의 C-TPAT 제도와,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에 기여하기 위해 발족된 교토협약 취지를 조화시켜 세계관세기구(이하 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무역 위험 관리 국제표준임
 - 1973년 채택된 교토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세관절차 단순화(Simplification)이며 이후 개정을 통해 WCO SAFE Framework의 토대가 됨

- 현재 AEO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총 63개국으로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7개국이 AEO를 시행하고 있음
 - AEO 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준비 중인 국가가 세계 교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상회함
 - 164개국이 WCO에 AEO 도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여러 국가들이 자국 실정에 맞는 AEO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 AEO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AEO 제도 가입 국가들은 FTA 및 글로벌 무역환경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무역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AEO 인증 업체 수를 확대하여 주요 교역국과의 AEO 상호인정을 통해 무역환경을 넓혀가는 노력이 중요함

1)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수출입통관 자체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AEO 인증 업체 수를 확대해 가면 주요 교역국과의 AEO 상호 인증을 통해 통관신속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입통관 관련한 비관세 장벽이 없어짐
 - AEO로 인증된 기업은 통관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며 AEO를 통해 기업 물류비를 줄이고 국제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함
- AEO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한상현·최준호(2007)²⁾는 WCO SAFE Framework의 주요 내용과 미국, 일본, EU, 우리나라의 보안강화의 시사점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으며, 최준호(2009)³⁾는 AEO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운영적, 관리적 측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정형곤·나승권·노유연(2010)⁴⁾은 한·중·일 3국이 현재 도입·운영하고 있는 AEO 제도를 검토하고 향후 3국의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AEO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AEO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AEO 제도 공인대상, 공인기준 및 등급, 혜택, 주요 인증기업 현황 등을 중심으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국의 AEO 제도가 대부분 WCO의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AEO 제도의 설립 취지에 따라 정책상 강화된 공인기준이 상이하고, AEO 등급 유무와 등급별 혜택 인

2) 한상현 외, 「WCO 표준(Standard)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안조치 강화 방안」,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 pp. 75~93.

3) 최준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제도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계간 관세사』, 제152호, 한국관세사회, 2009, pp. 62~71.

4)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정범위 등이 다르다는 점 등 국가별 상황에 따라 AEO 제도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AEO 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AEO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국의 AEO 공인 제도 이해와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공인기준, 공인혜택, 공인등급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을 제시함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AEO 제도 개요 및 현황, 공인기준, 수출업자 기준 AEO 공인기준 변경 사항 등을 조사함
 - 제Ⅲ장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 미국, 일본, EU, 중국의 AEO 제도에 대해 연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들의 AEO 제도의 주요 특징, 공인기준, 혜택을 비교, 분석함

II. 우리나라의 AEO 제도

1. 도입 배경 및 의의

- 9·11테러 이후, 미국은 대테러민관파트너십인 C-TPAT⁵⁾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를 필두로 세계관세기구(WCO)를 통해 SAFE Framework에 의해 권장되고 있는 AEO 제도가 체계화되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세관에 확산됨
 - 민관파트너십에서 ‘민’은 수출입업체를 포함한 무역공급망 운영주체를 포괄하며, ‘관’은 물류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인 세관을 의미함

- 또한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세관 통제 강화로 수출 물류에서 통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했고, 관세행정 측면에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공급망에 대한 국제표준인 AEO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2009년 정식으로 출범시키게 됨
 - 미국의 경우에는 2002년 8.7%에 불과하던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 검사비율이 테러 이후 2008년에는 22.4%까지 상승했고, 검사물품의 약 91%가 非AEO업체 물품으로 AEO 대 非AEO의 검사비율은 약 10배의 차이가 있었음⁶⁾
 - 물류단속이 강화되기 전에는 총기, 마약류가 전통적인 중점 단속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식품, 의약품, 부품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 AEO 제도 도입은 사회 안전과 국민건강보호, 국제경쟁력 제고 생존 전략,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모델로서 의의가 있음
 - 테러·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 차단, 성실 기업의 확대로 무역거래 및 물품의 신뢰성

5)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6) 김진규·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p. 172

이 향상됨

- 수출입 안전장벽 극복, 기업의 가치 상승(경쟁력 제고), 관세행정상 혜택이 부여됨
- 기업 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수출입공급망 전체관리, 관세행정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 과거에는 물품 중심 검사를 통해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AEO 제도 활용 등 수출입업체의 신용도를 보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2. AEO 제도 개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종합인증우수업체를 뜻하며, 무역공급망에 참여하는 대상들이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이 안전하다고 신뢰를 공인받은 업체를 의미함
- AEO 공인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AEO 제도는 수출입공급망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일정기준의 안전수준을 충족하는 업체에는 무역원활화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 관리함으로써 세관당국이 효과적으로 국경안정보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 협력 프로그램임
- 사회적으로는 고위험 화물과 기업에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사회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임
- AEO 제도 관련 법규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청 고시, 세칙의 네 종류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08년 WC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인 AEO제도를 법제화하고 2009년 세부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근거 법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제259조의3입

- 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신설하여 업체의 범위를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의함
- 259조의3을 신설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에서 신청과정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과정 등을 명시함
- 종합인증 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를 통해 AEO 제도를 마련함
 - AEO 제도의 적용대상업체, 공인기준 및 등급, 심사절차, 공인업체 지정 갱신 및 지정 취소, 국가 간 상호 인정에 대한 세부사항 등을 포함함
- 2009년 7월 공인인증 심사에 대한 ‘종합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

〈표 II-1〉 AEO 관련 관세법령

법령	내용
관세법 제255조 〈개정 2014.1.1.〉	제255조의2(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①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른 국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상호 조건에 따라 제3항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공인 심사요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⑥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수출입물품의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상담·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표 II-1〉의 계속

법령	내용
<p>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 〈개정 2010.3.26.〉</p>	<p>제259조의2(수출입안전관리 기준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였을 것 2. 관세 등 영업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지 않는 등 재무건전성을 갖출 것 3. 수출입물품의 안전한 관리를 확보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거래업체, 운송수단 및 직원교육체계 등을 갖출 것 4. 그 밖에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한 수출입 안전관리에 관한 표준 등을 반영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p>② 관세청장은 법 제25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를 교부받은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같은법 제27조에 따른 항만시설적합확인서를 교부받은 항만시설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기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p>③ 법 제25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세청장이 안전관리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3.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안전관리 기준의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p>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업무의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0.3.26.〉</p> <p>⑤ 법 제255조의2제3항에서 “통관절차상의 혜택”이란 수출입 물품에 대한 검사의 완화 또는 수출입 신고 및 납부 절차의 간소화를 말하며 그 세부 내용은 관세청장이 정한다.</p>
<p>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3</p>	<p>제259조의3(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 ①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p>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③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등급, 안전관리 공인심사에 관한 세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자료: 관세청

- 우리나라 AEO 제도는 관세청 주관하에 2009년 4월 시행됨
 - 2007년에 AEO 도입 로드맵을 작성하여 2008년에 추진방안을 마련함
 - 2008년 9월 AEO 시범사업(Pilot Test)에 11개 업체가 참여하였고 그 중 9개 업체가 AEO 공인을 받음

- 현재 AEO는 무역장벽 특히 통관상의 장애를 해소하는 기업의 필수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음
 - AEO 기업의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46%를 상회하며, AEO 도입국 국가 간 무역량은 전 세계 무역량의 80%에 달하고 있음⁷⁾

〈표 II-2〉 우리나라 AEO 제도 추진 경과

날짜	추진 경과
2007. 12	관세법 제255조 2 신설(AEO 시행 근거 마련)
2008. 9~2009. 3	AEO 시범사업 실시
2009. 2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 2 및 3 신설(AEO 이행방안 마련)
2009. 4. 15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정

자료: 관세청

가. 공인대상

- 우리나라 AEO 공인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항공사, 하역업자 등 9개업
 - 화물운송주선업자(Freight Forwarder)의 관세법상 정의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⁸⁾ 포워더로 불리며 선사와 확인하여 운임, 배 스케줄 및 운송서비스를 화주에게 제공함
 - 보세운송업자란 보세운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⁹⁾로 국내로 수입된 물품 중 세관에

7) 관세청 심사정책과 AEO센터 자료

8)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의 등록 및 보고)

통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의 물품(보세물품)을 일정지역(보세구역)으로 운송함
- 보세물품은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의 이동만 허용이 됨

- 2014년 4월 기준, AEO 공인을 받은 우리나라 기업은 총 539개이며 전체 공인업체 중 약 30%가 화물운송주선업자임
 - 공인수출업체 수 128개, 수입업체 118개, 관세사 78개, 화물운송주선업자 149개, 보세운송업자 21개, 보세구역운영인 29개, 선박회사 9개, 항공사 2개, 하역업자 5개 임¹⁰⁾

- AEO는 강제적인 제도가 아닌 민간업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운영됨

나. 공인기준 및 등급

- 공인기준은 신청업체가 종합인증 우수업체로 공인을 받기 위해 최소한으로 이행하거나 충족하여야 할 사항임

- 현행 AEO 제도의 공인기준은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부문임
 - 법규준수도는 1.- 로 표기, 내부통제시스템은 2.- 로 표기, 재무건전성은 3.- 로 표기, 안전관리는 4.- 로 표기함
 - 모든 공인대상(9개)에 4개 부문(section)의 기준이 동일하나 하위부문(sub-section)에 인증 대상에 맞는 다른 기준이 적용됨

- 4가지 공인기준은 필수기준과 권고기준으로 분류되며, 필수기준 항목의 경우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부문에서 100% 충족되어야 함
 - 필수기준의 경우 공인을 위한 최고점수 획득이 필요함

9) 관세법 제214조(보세운송의 신고인)

10) 관세청 AEO 자료실, AEO 공인업체명단(2014.4.15)

- 권고기준의 경우 신청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을 제외하고 모든 기준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충족되어야 함

〈표 II-3〉 공인대상별 필수 및 권고기준 구성

구분	법규준수도 (100% 충족)		내부통제 (80점)		재무 건전성 (100% 충족)		안전관리 (필수 100% 충족/ 권고 70% 충족)		총계
	공통필수	공통권고	공통필수	공통필수	공통권고	일부필수	일부권고	소계	
수출업체	4	19	3	35	20	2	2	59	85
수입업체	4	19	3	35	20	1	1	57	83
관세사	5	19	2	24	20	2	4	50	76
포워드	4	16	3	34	19	1	3	57	80
보세 운송업자	4	16	3	46	22	5	2	75	98
운영인	4	17	3	34	26	2	1	63	87
선박회사	4	16	3	31	15	1	3	50	73
항공사	4	16	3	42	18	1	3	64	87
하역업자	4	16	3	40	20	1	1	62	85

자료: 관세청

1) 법규준수

- 법규준수도는 수출업체가 AEO 공인 신청완료 시점까지 관세행정 법규준수 이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 법규준수도의 하위 공인기준은 신청인의 결격사유, 신청인의 법규위반, 수출입관련 법령준수, 관세행정법규준수도 등 4개로 공인 요건은 결격사유 없이 법규준수도 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함
- 관세청장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표 II-4〉 법규준수 세부기준

신청인의 결격사유	신청인은 법 제175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결격사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징역형 등
신청인의 법규위반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경우 2년 경과해야 함 * 법 제268조의2: 전자문서위·변조죄
수출입관련법령준수	FTA이행법, 환특법, 대외무역법 등 수출입관련 법령의 징역형 벌칙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
관세행정법규준수도	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한 관세행정법규준수도가 AEO 각 등급 기준 이상

2) 내부통제시스템

- 내부통제시스템은 법규준수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체제임
- 내부통제시스템의 하위 공인기준은 경영자 의지, 조직·예산 등의 지원, 관세행정 전문가 등과의 협조 등을 포함해 총 12개로 수출업체가 각자의 사업모델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임
 - 공인 및 유지에 필요한 내부환경과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 내부통제시스템 기준을 통해 수출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스스로 식별·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수출활동과 관련된 구조적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기대함

〈표 II-5〉 내부통제시스템 세부기준

경영자 의지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 및 안전관리목표와 경영방침 유무
조직, 예산 등의 지원	법규준수 제고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직과 인력의 확보
관세행정전문가 등과의 협조	관세행정전문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세행정프로그램에 참여
회계, 정보, 물품절차의 문서화	회계, 정보기술, 물품이동(구매, 제조, 보관, 운송 등)의 문서화 및 관리
세관업무 매뉴얼 구비	세관신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통관, 물품취급관련 각 매뉴얼 구비
거래업체간 상호협약의 체계 구축	거래업체간 상호 이해문제 등에 대한 정기적인 협의체계 구축
부서간 정보공유 원활화	업체 내 부서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정보의 연계성 적정
청렴성 유지	업무관련 청렴성 유지,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 프로그램 활성화
위험요소의 관리 및 개선	수출입활동 관련 Risk를 식별, 분석, 평가하고, 이를 제거, 전환, 개선, 치유, 사후분석 및 평가절차 마련
주기적 내부통제평가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취약점에 대한 개선
수출입물품관련 서류보관	수출입물품과 대금이동 관련자료를 관련법령에 따라 보관
운영시스템구축과 세관의 접근	물품과 대금추적의 기업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관의 접근 허용

3) 재무건전성

- 재무건전성은 수출업체가 관세행정 법규준수도와 수출공급망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규모와 재정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 재무건전성의 하위 공인기준은 기업규모, 국세의 완납, 일정수준의 재정능력 유지 등 총 3가지임
 -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고 체납이 없어야 하며,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00% 이내이거나 투자적격 업체이어야 함
-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공인기준을 만족할 수 있음

〈표 II-6〉 재무건전성 세부기준

일정수준의 기업 규모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수출업체: 수출통관 50건 이상 수입업체: 수입통관 50건 이상 관세사: 수출입신고건수 3,000건 이상 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주선건수 3,000건 이상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 1,500건 이상 보세구역운영인: 보세화물반입 1,500건 이상 선박회사: Master B/L 발급 10,000건 이상 항공사: Master B/L 발급 10,000건 이상
국세의 완납	신청업체가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함(관세사 제외)
일정수준의 재정능력 유지	회계감사 결과 적정업체로서 부채비율 200% 이하이거나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

4) 안전관리

- 안전관리 기준은 시설, 직원, 협력업체 관리 등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임
- 안전관리의 하위 공인기준은 총 8개로 거래업체 관리, 운송수단 등 관리, 출입통제 관리, 인사관리, 취급절차 관리, 시설과 장비 관리, 정보기술관리, 교육과 훈련 등의 기준이 있음
 - 8개 각 분야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수준 이상이어야 함
- 기준충족률 70% 이상이어야 공인기준을 만족할 수 있음

〈표 II-7〉 안전관리 세부기준

출입구 최소화와 모니터링	경비를 세우거나 모니터링. 출입구 숫자는 최소한으로 운영
경보장치와 비디오카메라	시설을 모니터링하고, 물품취급 및 보관지역에 불법적 접근방지
주차 통제	개인차량은 물품취급, 보관장소 내 또는 인접지역에 주차금지
건물의 안전	불법출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 사용과 주기적 점검 및 보수
잠금장치관리	출입구, 창문, 울타리에는 잠금장치 설치하고 관리
조명관리	출입구, 물품취급 및 보관지역, 울타리, 주차지역에는 적절한 조명
정보보호절차	암호, 계정관리, 정보의 불법접근과 변조방지, 백업 및 대체시스템
위탁시 보호절차	기업 운영시스템의 위탁시, 수탁업체의 정보보호 절차 점검
위협인식프로그램 운영	발생가능 각종 위협 이해, 인식 강화하는 위협인식프로그램 운영
직원훈련과 인센티브 제공	물품의 무결성 유지하는 구체적 훈련실시와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공인등급은 공인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에 따라 AAA, AA, A 등 3등급으로 분류됨
- 등급은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중 법규준수도를 측정함
 - 단, 법규준수도가 70점 미만인 업체는 공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표 II-8〉 우리나라 AEO 공인 등급

등급	신용도
AAA	A 또는 AA등급 종합인증 우수업체 중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가 95점 이상이면서 법규준수도 제고 등과 관련하여 다른 업체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업체
AA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업체
A	법규준수도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자료: 관세청

다. 수출업자 기준 AEO 공인기준 변경 사항¹¹⁾

- 현재 수출업자의 경우 공인기준의 세부항목은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규 준수도 5개 조항, 내부통제시스템 22개 조항, 재무건전성 3개 조항, 안전관리 60개 조항임
 - 관세청의 AEO 가이드라인은 공인기준 4개 부문에 대한 세부기준 항목을 소개하고 있음

1) 삭제된 기준 조항 및 기준 완화 여부

- 현재 총 22개 내부통제시스템 기준 항목 중 9개가 삭제되어 내부통제 부문에서의 공인 기준이 완화됨
 - 2013년 5월 7개 조항이, 2014년 3월 2개 조항이 삭제됨
- 삭제된 조항은 내부통제시스템 중 경영방침, 목표수립, 인력확보, 윤리경영방침 마련 등에 대한 기준임
 - 최고경영자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 수립
 - 법규준수와 안전관리에 대한 경영방침 이행에 대한 세부목표 수립
 -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과 인력 확보, 관세행정 발전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청렴성 유지를 위한 윤리경영방침 마련과 내부고발제도 등 부정방지프로그램 활성화
 - 수출물품의 선(기)적시까지 운송의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 마련
 -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 법규준수와 안전관리를 위한 거래업체와의 정기적 협의 필요

11) 시행 당시(2009)와 현재(2014) 세부항목 비교,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2009년 및 2014년 자료 참고

2) 신설된 기준 조항

- 공인기준 중 법규준수 부문에서 1개 조항이 신설되어 법규를 위반한 업체의 경우 재신청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신설 조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2년이 경과되어야 신청자격 획득이 가능함
 - 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 제276조에 따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함(1.1.4)

3) 개정된 기준 조항

- 2009년 AEO 제도 발족 당시 법규준수도의 공인기준 점수는 85점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80점으로 낮아져 기준이 완화되었음
 - 과거 동 조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점수가 일정점수(85점) 이상이어야 함'임
- 개정된 2.1.4 조항은 관세행정 전문가 협의와 통관자격증 소지자 근무 의무화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여 AEO 공인기준을 완화함

〈표 II-9〉 2.1.4 개정 전 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u>관세행정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통관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경험자를 근무하도록 하며</u> ,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수출업체는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기존의 3.2.2 조항은 ①, ②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AEO 공인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조항은 ①, ②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②의 조건도 부채비

율 200% 이하에서 관세청장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기준이 완화됨

〈표 II-10〉 3.2.2 개정 전 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p>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함</p>	<p>신청업체는 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거나, <u>일부한정으로서 관세청장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이어야 하며, ② 부채비율이 동종업종의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이거나 외부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을 유지하는 등 성실한 법규준수의 이행이 가능할 정도의 재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①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업체에만 적용함</p>

4) 수출업체와 중소기업 공인기준 비교

- 중소기업들은 수출입통관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관상 혜택을 제공하는 AEO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음¹²⁾
 - 중소기업중앙회 관세행정 관련 설문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함
 -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이유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70.9%)’, ‘공인기준이 까다로워서(8.1)’, ‘컨설팅 비용부담이 너무 높아서(6.6%)’ 등임
-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일반수출업체와 중소기업체를 구분하는 별도의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중소기업체의 AEO 가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 2009년 4월 AEO 제도 최초 시행 당시에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별도의 공인기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3년부터 개정작업을 거쳐 2014년에 완성함

12) 중소기업중앙회 관세행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2014.4)

- 또한 AEO 공인기준 완화 정책은 중소기업이 예비심사를 신청하면 먼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안을 마련함
 - 기존 심사요건은 18개였으나, 11개로 축소됨

- 관세청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와 관세행정 특히 통관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AEO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임

- 일반수출업체와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해당 여부로 판별하여 적용함
 - 동법 기준에 부합하는 중소기업체는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제조업체임

- 일반수출업체와 중소기업체에 달리 적용되는 조항은 총 15개로, 안전관리기준에서 가장 많은 기준완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여짐
 - 내부통제시스템 2개, 재무건전성 2개, 안전관리 11개임

- 중소기업체에 대해 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부문 2개 조항은 관리대책 주기와 통관 및 수출입물품 관리 절차의 문서화에 대한 것임
 - 수출업체는 관리대책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관리 주기가 2배 길어 일반수출업체로 분류되는 공인신청기업 대비 요구수준이 낮음 (2.2.4)
 - 일반수출업체에서의 주기적이라 함은 업체에서 정한 일정기간임(관리대책 실행 기간의 1/2(6개월을 초과할수 없음))
 - 중소기업체는 업체에서 정한 일정기간임(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수출업체는 통관적법성과 수출입물품 관리 등에 대한 절차를 문서화하고 최신자료를 유지하여야 하는 데 있어 일반수출업체의 문서화 기준이 중소기업체보다 더 높음(2.3.1)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업체는 관련 제도 및 내부 업무 처리절차가 변경된 경우 매뉴얼 등 문서화된 절차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변경이력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체는 위 의무에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체에 대해 완화된 재무건전성 부문 2개 조항은 수출신고수리건수와 연평균 매출에 대한 것임
 - 일반수출업체가 중소기업체보다 수출신고수리건수가 2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체 수출신고건수에 대한 요건을 완화함(3.1.1)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수출 신고수리건수가 50건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체의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부터 소급하여 최근 3년간 매년 수출 신고수리건수가 25건 이상이어야 함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가 요구되나 중소기업체의 경우 5% 이상으로 기준이 일반수출업체 대비 적용 기준이 낮음(3.2.2)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인 반면, 중소기업체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5% 이상 매출 증가(금액 기준)로 중소기업체에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함

- 중소기업체에 대해 완화된 안전관리 부문 11개 조항은 인증 승인에 대한 문서 보유, 참여상태 변경시 기록·유지 여부, 신원확인 및 검문 절차 부재 여부, 최종포장단위 물품공급업체의 안전장치설치(올타리, 안전유지, 조명, 감시카메라), 인력배치, 주차구역 표시, 컴퓨터시스템 관리 및 정보기술 오남용 확인 시스템 설치 등에 관한 것임

- 중소기업체와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인증 승인에 대한 문서 보유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운송인,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거래업체가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표시하는 문서 보유시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변경(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하나 중소기업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4.1.2)

- 중소기업체와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참여상태 변경시 기록·유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외국 세관당국에서 운영하는 안전관리제도의 종합인증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거래업체에 그 참여 상태를 표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수출업체의 경우에만 변경시 기록·유지해야 하는데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변경(갱신, 등급변경, 공인취소 등)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요구하고 그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체에는 해당사항 없음(4.1.5)

- 중소기업체와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신원확인 및 검문 절차 부재 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름
 -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하고 대응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중소기업체는 출입통제절차가 있을 경우 신원확인 및 검문에 대응하는 절차가 부재하여도 공인기준이 만족되므로 기준이 완화됨(4.3.5)
 - 중소기업체의 경우 출입통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출입구(출입문 포함)에 차단시설(잠금장치 포함)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에는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경비인력 배치, 전자통제장치, 감시카메라 등)을 마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 중소기업체와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물품공급업체의 안전장치설치(울타리, 안전유지, 조명, 감시카메라)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물품공급업체도 수출업체에 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체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4.6.1)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불법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여야 하지만 중소기업체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공급업체에 대한 안전유지에 관한 요구가 없음(4.6.4)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물품공급업체의 수출물품 취급장소(생산·보관 등)에 대하여도 수출업체의 건물에 준하는 안전이 유지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현관 및 출입구,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울타리, 주차지역을 포함한 시설 내외부에 적절한 조명을 설치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공급업체에 대해 조명 설치에 관한 요구가 없음(4.6.6)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물품공급업체의 수출물품 취급장소(생산·보관 등)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수출업체는 물품 취급 및 보관장소에 권한 없는 접근을 방지하고 시설을 감시하기 위하여 경보장치와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공급업체의 수출물품 취급장소에 경보장치 또는 감시카메라 설치 요구사항이 없음(4.6.7)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최종 포장단위 물품공급업체의 수출물품 취급장소(생산·보관 등)에 대하여도 권한 없는 사람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또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요구하고, 요구한 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중소기업과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인력배치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감시의무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일정요건이 만족되면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인정됨(4.6.2)
 - 중소기업의 경우 권한이 없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출입통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출입구(출입문 포함)에 차단시설(잠금장치 포함)을 설치하여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출입통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을 경우에는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함
- 중소기업과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주차구역표시에 대한 기준이 다름
 - 물품 취급 및 보관 시설 내부 또는 인접지역에 개인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주차구역 구분 표지에 대한 조건이 없음
(4.6.3)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주차구역을 구분(방문자, 직원, 업무용 등)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함

□ 중소기업과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컴퓨터시스템 관리 및 정보기술 오남용 확인 시스템 설치에 대한 기준이 다름

- 컴퓨터시스템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개별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전산시스템 백업을 주기적(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시행하여야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주기적'의 시간제한이 없음
(4.7.1)

- 사업자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 조작 및 교환을 포함한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기술 오남용 확인 시스템 설치의무가 없음(4.7.2)

- 일반수출업체의 경우 관련 정보기술의 오남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 공인기준 완화 외에도 관세청은 2011년부터 중소기업 재정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 4월 기준 중소기업 48개와 중소기업 122개로 총 170개 업체를 지원함¹³⁾

- 2011년 55개, 2012년 61개, 2013년 54개 중소기업을 지원함

□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인준비시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및 관련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임

- 2014년 현재 컨설팅 비용은 16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공인 획득 및 유지에 필요한 AEO 관련 교육비용은 업체당 60만원까지 지원함

□ 예산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AEO 공인 신청

13) 김진수의 AEO 제도 바로 알기, 물류신문

전에 미리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AEO 공인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임¹⁴⁾

〈표 II-11〉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시행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목표	
	업체 수	지원금액	업체 수	지원금액	업체 수	지원금액
수출업체	16	358	23	515	65	1,040
물류업체	45	450	31	310	-	-
소계	61	808	54	825	65	1,040

자료: 중소기업 AEO 지원제도, 물류신문

라. 신청 준비와 절차

- AEO 공인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신청함
 - 신청업체의 AEO 관리책임자는 16시간 이상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함

- 업체가 AEO 공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인기준에 대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자체평가표(Self Assessment)¹⁵⁾를 통해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를 작성해야 함

- AEO 공인절차는 업체의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업체의 공인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최종 종합인증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심의 → 공인의 순서임
 - 공인신청 전에 준비한 사항들의 적합성 여부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선택사항임

14) 관세청 AEO센터 보도자료 인용

15)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작성된 표

- AEO 공인 신청업체는 8가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 자체평가표(S/A : Self Assessment)
 - 수출입관리 현황설명서 및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명세서
 - 수출입관리 우수사례 보유내역(선택)
 - 관리책임자의 교육이수 내역서

- 서류심사는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AEO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며 서류 확인부터 서류심사 완료까지 약 2~3개월 소요됨
 - 제출서류 기준충족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60일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할 시 30일 추가로 소요됨

- 현장심사는 신청업체의 본사 및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서류심사 완료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심사 일정이 통보됨

-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AEO 업체 공인, AEO 업체 등급조정, 공인유보업체 지정, AEO 업체 공인의 취소, 기타 AEO 업체 공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그 후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공인기준의 유지 및 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사후관리가 행해짐

[그림 II-1] AEO 공인 절차



자료: 한국 AEO 진흥협회

마. 혜택¹⁶⁾

- AEO 인증시 수출업체에 주어지는 혜택은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수출신고 항목의 화주 자율정정¹⁷⁾, 서류 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 제증명서 P/L 발급¹⁸⁾, 원산지 자율증명 등임
 - 서류제출대상 제외시 현행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공인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함¹⁹⁾
 - 수출물품 선별검사시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서류제출 및 환급전심사 제외시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환급지세관 환급심사부서에서의 건별 환급심사 제외함²⁰⁾
 - 원산지 자율증명의 경우 성실업체를 자율증명 요건으로 하는 FTA에 한함

- 공인인증시 수입업체에 주어지는 혜택 관리대상 화물의 선별 제외 및 검사대상 화물 반입 허용, 수입물품 검사대상 선별 제외 등임

16) 관세청 수출입관리고시,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17)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2조
 18)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4-1조
 19)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3조
 20)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5, 제2-2-8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에 따른 관리대상화물의 선별 제외
 -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 검사대상 화물 반입 허용
 - 검사대상 수입화물을 수입업체의 희망장소로 반입 허용하는 비율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8조에 따른 수입신고 서류제출
- 대상 선별 제외(수입 P/L)
- 수입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수입물품의 검사대상 선별 제외
 - 무작위(Random) 선별은 제외대상 아님
-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월별납부고시”) 제11조에 따른 월별납부
-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제외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2조 단서에 따른 월별보정
-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서의 건별 보정 심사 제외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6-5조에 따른 자율사후관리
-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관세법상 건별 사후 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
- 월별납부고시 제9조에 따른 관세법상 월별납부를 위한 담보 제공
- 월별납부고시 제8조 신고수리 전 반출물품, 보세공장·건설장 과세보류대상물품에 대한 월별납부 허용
- 자율관리보세공장 지정 및 특례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등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 시행시부터 적용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라 동일 세관관할 구역 내 보관창고 증설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의 입항 전 사용신고 및 사용신고 수리를 전산처리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른 보세공장 보세운송특례적용신청의 일괄 승인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30조에 따라 보세공장의 보세운송신고를 전산처리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설치·운영특허 취소, 반입정지 등 처분

시 경감

- 월별납부고시에 따른 월별납부 대상 확대
 - 수리 전 반출, 보세건설장 반입 수입건도 월별납부 대상에 포함

- 2014년 7월 1일부터 할당관세 대상물품, 간이특송물품, 우편물품 등을 수입신고할 경우에도 세관의 심사 없이 즉시 통관을 허용하는 등 통관혜택을 확대함
 - 이전에는 AEO 업체의 경우라도 위험도가 높은 간이특송물품 등 27개 항목²¹⁾이 포함된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세관심사를 종료한 후에야 통관을 허용했음

- 품질인증 등 수입시에 요건 확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도 AEO 업체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을 생략함

- AEO AA에 한정되던 세관심사생략 대상기업 범위가 AEO A등급으로 확대됨
 - 종전에는 AEO AA등급 이상의 경우에만 세관심사 생략이 가능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AEO A등급 이상이면 세관심사를 생략하고 즉시 신고 수리 가능함

- 그 외 모든 공인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는 감형, 법인심사 제외, 과태료 경감 등임
 - 법규위반시 행정형벌보다 통고처분, 행정질서벌 등 우선 고려
 -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기획심사, 법인심사 제외
 - 현행법,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심사 가능
 - 관세법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과태료 경감
 - 시행세칙 별표 1 내지 3의 부과금액 중 해당연도 1차 적발 해당분 모두를 경감
 - 의견진술 기간 내에 자진납부한 경우 20%를 추가 경감

21)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식물,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등

- 적용시점은 과태료 부과시점
-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여행자 검사대상 선별 제외
- 국제공항 입출국시 전용검사대를 이용한 법무부 입출국 심사
- 국제공항 출국시 승무원전용통로를 이용한 보안검색
- 국제공항 입출국시 CIP라운지 이용
- 조달청의 정부물품구매 적격업체 신인도 평가에서 0.5점 가산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5점 가산
- 국세청의 성실납세자 우대조항에 의한 납세유예
- 관세법칙 등 통고처분 양정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통고처분금액의 경감
- 외국환 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외국환 검사 제외
 - 현행법,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검사 가능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

- 우리나라의 AEO 인증업체는 2014년 4월 기준 수출업체 128개, 수입업체 118개, 관세사 79개, 화물운송주선업자 148개, 보세운송업자 21개, 보세구역운영인 28개, 선박회사 9개, 항공사 2개, 하역업자 4개 등 총 539개임

〈표 II-12〉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 현황

	업체명
수출업체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유한킴벌리, LG 화학, 현대모비스 등 총 128개 업체
수입업체	한국3M, 볼보그룹코리아, 삼성전자, 엘지전자, 삼성전기, 현대하이스코, 현대제철, SK케미칼 등 총 118개 업체
관세사	관세법인 새 신한, 신한관세법인, 에이스관세법인, 세인관세법인, 관세법인 에이원 등 총 79개 업체
화물운송 주선업자	삼성전자로지텍, 대한통운, 한솔CSN, 고려해운항공, 현대글로벌비스, 아모스항공해운, 세종해운 등 총 148개 업체
보세운송 업자	호텔신라, 조양국제종합물류, 해강로티앤에스, 현대로지엠, 해강운수, 협동통운, 미래종합물류 등 총 21개 업체
보세구역 운영인	부산신항만(주),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주)DHL 코리아, 아시아나항공, 한진, 세방 등 총 28개 업체
선박회사	고려해운, 현대상선, 한진해운, 흥아해운 등 총 9개 업체
항공사	동진상선, 대한항공 등 총 2개 업체
하역업자	아시아나항공, 선광, 주식회사 한진, 셋방, 인터지스주식회사 등 총 4개 업체

자료: 관세청 AEO센터, AEO 공인업체 명단

Ⅲ. 주요국의 AEO 제도

1. 세계관세기구(WCO) 국제규범

가. 도입 배경

-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는 국가 간 무역 및 상품이동 안전문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 무역원활화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SAFE Framework (the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의 화물보안의정서(protocol)를 채택함

나. 공인대상

- AEO 적용대상은 모든 무역공급망 당사자임
 - 수입업체
 - 수출업체
 - 관세사
 - 창고업자
 - 운송업자
 - 선사·항공사
 - 부두운영인
 - 포워더

다. 공인기준 및 등급

- 세계관세기구(WCO)에는 무역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표준으로 세관 간 협력(pilla 1)과 세관-민관 간의 협력(pilla 2)으로 나뉘어져 있음²²⁾
 - 세관 간 협력(pilla 1)은 고위험군 화물 식별을 위한 전자정보의 사전교환과 비파괴 검사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통합된 공급망 관리
 - 화물검사권한
 - 검사장비의 현대적 기술
 - 위험관리 시스템
 - 고위험화물 또는 컨테이너
 - 선별 및 정보 교환
 - 이행실적 측정
 - 항만안전평가
 - 고용인의 청렴성
 - 반출시 안전성 검사
 - 세관-민관 간의 협력(pilla 2)은 민간업체를 인증하여 국제적인 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이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내용이 핵심임
 - 파트너십
 - 안전성
 - 혜택
 - 기술
 - 정보교류
 - 원활화

- WCO SAFE Framework는 AEO를 위한 조건과 의무사항으로 운송보안, 직원교육, 서

22) 한상현 외, 「WCO 표준(Standard)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안조치 강화 방안」, 『관세학회지』, 제8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07, pp. 75~93.

류관리시스템 등으로 13개로 분류함²³⁾

- 세관은 AEO 지원업체가 AEO 자격을 신청했을 때 세관 의무사항과 관련하여 과거부터 성실히 의무를 이행했는지 고려해야 함
- 적절한 기업기록의 관리시스템은 수출입에 관련하여 시의적절하고 입증 가능한 자료를 보유해야 함
 - 입증가능한 기업기록의 관리는 국제물류체계의 안보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임
- 재정적 실행가능성은 물류체계의 안전을 확보하며 유지·증진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임
- 모든 국가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세관과 다른 관련기관과 상담, 협력,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이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함
 - 물류체계의 안전과 신속을 포함한 주제에 대한 협의이며 이는 법률 실시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협의 결과는 세관 발전과 위기관리전략의 유지에 기여함
- 교육, 훈련, 인지기준에서 세관과 AEO는 안보정책과 해당정책 위반 그리고 안보 흐름에 응답하여 어떤 행동이 취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에 관련하여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구조를 개발해야 함
- 정보의 교환, 접근, 비밀보장은 정보보안의 통합전략의 일환으로서 정보의 오용이나 비정상적인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공고히 함
- 화물보안에서 세관과 AEO는 화물 통합체계의 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체제를 확립하고 강화책을 확립함
 - 화물보안에 기여하는 일상책뿐만 아니라 접근통제가 최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운송보안은 운송수단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유지되도록 해야 함
 - 다른 기관에 의하여 제공되고 있지 않은 수단의 개발을 위하여 협력해야 함
- 건물보안은 국제적 의무기준과 AEO 견해를 고려하여 건물의 내외부를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뿐만 아니라 건물보안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의 의무사항을 개발함
- 인적보안은 권한과 역량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용인의 신원을 조회해야 함

23)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June 2012

- 물류 체계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 운송수단, 양하선적, 화물저장소에 대한 허가되지 않은 자의 접근을 금지해야 함
- 무역상대방 보안기준은 보안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AEO 의무사항과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위기관리와 사고복구는 재난이나 테러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기관리와 복구절차가 특이한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 계획되어야 함
- 가이드라인과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평가, 보안관리시스템에 대한 무결성과 충분성에 대한 보장, 물류체계 보안의 증진을 위하여 보안관리시스템을 증진하기 위한 잠재적 요소의 인지 등을 위하여 측정, 분석, 개선절차를 거쳐야 함

라. AEO 혜택

- 세계관세기구(WCO) AEO 운영지침에는 혜택들의 원칙과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²⁴⁾
 - 혜택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문서로 마련되어야 함
 - 인증받지 않은 AEO 기업에 제공하는 것과는 다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해 줘야 함
 - 의미 있고 측정가능하고 보고가능한 혜택들을 주어야 함
- 첫 번째 혜택은 화물반출을 신속하게 하며, 운송시간 및 창고비용 절감 혜택이 있어야 함
 - 화물반출에 대해 자료제출 생략할 수 있음
 - 신속한 절차와 선적반출이 가능함
 - 최소한의 화물보안검사를 받음
 - 검사가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검사를 최우선 고려함
 - AEO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특정 수수료의 인하나 책임을 줄여야 함

24) 김진규 외,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49권, 2011년 2월 pp.167~188

-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상시 협조요청 가능
- 두 번째 혜택은 AEO 참가 기업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함
 - 다른 참가업체의 동의하에 AEO 업체의 연락처와 상호를 제공함
 - SAFE Framework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명단을 볼 수 있음
 - 확인된 안전관리기준과 우수사례(best practices)를 볼 수 있음
- 세 번째는 무역에 있어 위급하고 위기상황에 특별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함
 - 고조된 위기상황 동안 세관 절차상에 있어 최우선 고려됨
 - 항구나 공항을 폐쇄하거나 재개할 경우 최우선 절차를 받을 수 있음
 - 사고 이후의 수출재개에 있어 최우선권이 부여됨
- 네 번째는 새로운 화물절차 프로그램에 첫 번째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줘야 함
 - 건별 통관(transaction-by-transaction)이 아닌 기업별 통관절차를 받을 수 있음
 - 단순화된 사후반입이나 사전통관제도를 받을 수 있음
 - 자율심사 자격이나 경감된 심사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음
 - 사후반입이나 사전통관절차 질의를 신속하게 해결받을 수 있음
 - 과태료적인 행정벌이 경감됨
 - 수출입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서류 없는(paperless) 절차 보장
 - 세관의 법규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최우선적 답변을 받음
 - 원격세관통관(remote Customs clearance)에 대한 자격 부여됨
 - 사기를 제외하고 과태료적 행정벌 부과 전에 종결이나 시정조치됨
 - 지체된 관세의무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칙이나 변제손해에 부과되는 이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됨

2. 미국

가. 도입 배경

- 9·11테러 이후 런던, 마드리드 테러가 발발하는 등 테러리즘에 대응하고 불공정 무역에 따른 국경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 제기됨
- 민-관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를 만들었으며 WCO SAFE Framework의 토대가 됨
 - C-TPAT는 무역 업계가 CB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와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법규 및 보안기준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화물 및 운송수단에 대해서는 무역흐름을 촉진하는 수출입물류보안 프로그램임
 - C-TPAT는 2001년 11월 시작되었으며 수출업체를 제외하고 수입화물에 대한 보안에 중점을 두며 시작하였으나 2014년 수출업체도 공인대상에 포함됨
- 2006년 항만보안법(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of 2006)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됨

나. 공인대상²⁵⁾

- 모든 공급망에 적용되며 12개의 공인대상이 있음
 - 수입업자
 - 수출업자
 - 항공운송업자
 - 화물혼재업자(항공운송 혼재업자, 해양운송 중개인, 무선박 운송인(NVOCC)²⁶⁾)

25) 미국 세관(CBP)

26) 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s

- 관세사
- 외국 제조업자
- 고속도로 운송업자
- 멕시코의 장거리 운송업자
- 항만 터미널 운영업자
- 철도 운송업자
- 해상 운송업자
- 제3자 물류업자임

다. 공인기준 및 등급²⁷⁾

- C-TPAT 제도는 공급망 당사자별로 보안기준(Security Criteria) 및 보안가이드(Security Criteria)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대부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²⁸⁾
- 수출업체는 C-TPAT 보안기준에 따라 국제적 공급망에 종합적 평가를 해야 함
 - 수입자가 외국 시설, 국내 창고, 운송업체 같은 공급망 업체들과 계약을 주거나 아웃소싱을 할 경우 사업 파트너들의 공급망을 통해 적절한 보안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관리해야 함
- 사업 파트너들에 대한 조건은 수출업자는 제조업자, 공급업자, 구매자를 포함한 사업 파트너 선정을 증명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하며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이 과정은 Department of Commerce/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Department of State/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 (DDTC), Department of Treasury/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리스트의 점

27) 미국 세관(CBP)

28) 남풍우 외,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2008

검을 포함하여 진행되어야 함

- 보안절차에서는 사업 파트너들(수입업자, 운송업자, 항만, 터미널, 관세사, 화물혼재업자)이 C-TPAT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을 위해 문서를 보유해야 함
 - 문서에는 C-TPAT 증명서와 SVI²⁹⁾ 번호 등에 대해 문서화해야 함
 - C-TPAT 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문서 또는 전자적인 확인을 통해 보안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해야 함

- 원산지에 대해 모든 수출업자는 사업 파트너들과 C-TPAT 보안기준에 부합하는 보안 절차와 과정을 만들어야 함
 - 원산지의 선적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함
 - 현재 혹은 잠재적인 사업 파트너들의 공급망 보안 프로그램을 미국 이외의 관세 행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참여상태를 수출업체에 통지해야 함

- 사업 파트너들은 선택을 위한 다른 내부 기준에서 내부적 요건은 수출업자가 재정건전성, 계약상으로 보증된 보안 요건, 필요에 따라 보안 부족을 고칠 수 있거나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 내부 요건은 내부 관리팀에 의해 결정되어 평가되어야 함

- 컨테이너 보안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물건이나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함
 - 컨테이너 적입 작업 수행 시점에서 선적 컨테이너와 트레일러에 대해 적정하게 봉인을 하고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야 함

- 컨테이너 검사의 경우 적재하기 전에 컨테이너 조사에서 7가지 조사 과정이 권고됨
 - 정면 벽
 - 왼쪽 면
 - 오른쪽 면

29) C-TPAT 비즈니스 파트너의 참여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회원 간의 사용자인터페이스임

- 바닥
 - 천장
 - 내부와 외부의 문과 잠금장치(fasteners)
 - 밖/하부구조(Undercarriage)
- 컨테이너 실(seal)에서 지정된 직원만이 컨테이너 실을 배분할 수 있음
- 문서화된 과정을 통해서 컨테이너 실(seal)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고 붙여져야 하는지 규정되어야 함
 - 컨테이너는 허가받지 않는 접근과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구역에 위치해야 하며 모든 과정을 보고해야 하며 컨테이너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을 막아야 함
 - 모든 실(seal)은 PAS ISO 17712 표준을 충족시키거나 초과하는 보안요건을 갖추어야 함
- 컨테이너 보안은 보안지역에 보관되어야 하며 허가되지 않은 접근과 조작을 막아야 하며 특히 허가되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함
- 허가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SCSS(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에 알려야 함
- 물리적 접근통제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물건이나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함
- 모든 진입 지점에서 사람들에 대한 신분확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분확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진이 부착된 방문자용 신분증이 제시되어야 함
 - 우편물과 배달화물은 판매자 및 화물에 대한 검사가 시행되어야 함
 - 통제과정 중에 허가받지 않았거나 신원불명의 사람에 대해서 확인과정을 거치고 진입을 차단해야 함
- 직원 보안에 있어서는 고용 예정자와 현재 피고용인들을 위해 정기적인 검사 절차를 마련해야 함

- 고용 전의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자의 신청서와 관련하여 고용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법과 관련하여 배경 검사를 해야 함
 - 고용 후에도 직원의 위치에 따라서 정기적인 검사와 재조사를 해야 함
 - 계약이 끝난 직원의 경우에는 신분증,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접근을 없애는 과정을 거쳐야 함
- 절차적 보안은 공급망에서 물품 수송, 화물 보관, 처리와 관련한 과정의 보안과 통합을 확실하게 이행해야 함
- 모든 정보가 적법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정보의 교환, 손실을 막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 선적화물은 적하목록상의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중량, 라벨, 마크(mark), 개수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함
 - 화물이 수취되거나 방출되기 전에 화물을 배송하는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물품의 반출입을 추적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함
 - 모든 부족, 과잉, 불일치 또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조사하여 해결해야 하며 불법적인 활동은 세관이나 법률 집행 기관에 통지되어야 함
 - 내부적 음모와 접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직원에게 추가적인 보상과 특정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
- 물리적 보안의 경우 국제적 소재지에 위치한 화물 처리 및 저장 시설은 물리적 장벽 및 권한이 없는 접근을 보호하는 억제책이 필요함
- 제조업자들은 해당 공급망을 통해 장벽치기, 출입구 및 출입실, 주차, 빌딩구조, 잠금장치 및 열쇠통제, 조명, 경고 시스템 및 비디오 감시카메라 등 물리적 보안지침을 구체화해야 함
 - 장벽의 주변은 하역과 저장 시설 주변 지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모든 장벽은 정기적으로 온전성과 위협에 대비하여 검사해야 함
 - 출입구 및 출입실은 사람이나 차가 들어갈 경우 사람이 있거나 감시되어야 하며 출입구의 숫자는 통제와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함

- 조명의 경우 적절한 조명이 출구와 입구, 하역(cargo handling), 율타리, 저장 공간, 주차장 시설의 안과 밖에 제공되어야 함
 - 알람 시스템과 감시 비디오 카메라는 하역과 저장 공간에 허가되지 않는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어야 함
 -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촬영하는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함
- 정보 기술 보안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은 개인적으로 할당된 계정을 써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바꾸어 주어야 함
 - IT 보안 정책, 절차, 기준은 훈련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함
 - 사업 데이터가 부적절한 접근에 의해서 변경되거나 조작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모든 시스템은 이용자들은 데이터의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받아야 함

라. 신청준비와 절차³⁰⁾

- C-TPAT 프로그램에서 신규회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CBP 온라인 가입만이 가능하며 가입비용은 무료임
 - C-TPAT 가입을 위해서는 회사가 직면한 위험 수준을 알아보고 보안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함
- 신청회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프로그램 참가동의서와 회사정보(Company Profile)와 보안정보(Security Profile)를 C-TPAT 홈페이지에 등록함
 - 회사정보를 입력 후 제출 버튼을 누르면 C-TPAT 홈페이지에 계정이 생성됨
 - 계정 생성 후 온라인상에 등재되어 있는 Supply Chain Security Profile을 작성해야 함
 - 보안정보(Security Profile)는 C-TPAT의 보안기준의 각 항목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의 과거 기록을 요약해야 함

30) 미국 세관(CBP)

- 신청된 자료 검토 후 C-TPAT의 최소한의 보안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결정함
- 제출 후 Security Profile에 수정이 될 부분이 있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음

- 모든 Security Profile이 승인되면 C-TPAT에서 인정한 회사가 되지만 부분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보안 정보에 맞게 회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검증하기 위해서 보안전문가(SCSS)가 배정됨

- 향후 1년 이내에 세관에서 참가회사를 실사해 승인된 보안운영계획대로 수입절차가 진행되는지를 확인한 후 검증(Validation)함
 - 검증(Validation)은 지정된 국내외 지역을 방문하고 C-TPAT 참여자가 공급망 보안 기준을 정확하게 이행하는지 확인함
 - 보안전문가(SCSS)가 검토를 마친 뒤 조건에 부합된다면 모든 혜택을 받게 됨
 - 최초 검증 후 3년 이내에 재검증을 실행함

마. AEO 혜택³¹⁾

- 미국은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3단계 즉, Tier 1, Tier 2, Tier 3으로 구분하여 차별화하였으며 Tier 3의 경우 가장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미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컨테이너를 검사하는 대신 CBP는 위험을 보유한 컨테이너를 선별하기 위해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 점수를 이용함
 - ATS가 고위험 컨테이너를 확인하면 컨테이너에 부과할 보안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CBP는 B/L요청, x-ray 검사, 개장 및 물리적 검사를 수행함

- Tier 1의 경우 CBP에 의해 인증되면 ATS 점수가 낮아지고 CBP에 의한 화물검사가 감

31) 미국 세관(CBP)

소하며 정밀 재검사 비율이 줄어들게 됨

- 그 밖에 FAST(Free and Secure Trade) Lane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국경 화물 처리함
 - FAST(Free and Secure Trade)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 및 멕시코 기업 중에서 CBP가 제시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하기로 합의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통관제도임³²⁾
 - Advance Electronic Cargo Information System- Trade Act of 2002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경감함
 - 해상화물에 대한 24Hours-Rule의 개념을 모든 화물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법343조에 따라 미국반출입 모든 화물의 정보를 도착 또는 출발 전에 EDI 시스템을 통해 CBP에 제출해야 함³³⁾
 - 수입자자기평가(Importer Self Assessment, ISA) 프로그램 자격 부여함
 - 공급망 보안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음
 - 회원과 CBP 사이에 연락처로 공급망 보안전문가(Supply Chain Security Specialists, SCSS)를 지정함
 - 통합관리시스템(Status Verification Interface, SVI)을 통한 C-TPAT 구성원간 정보 공유를 할 수 있음
 - 강화된 물리적 컨테이너 보안 및 개선된 보안 추적시스템(tracking system)으로 인한 도난 감소효과가 있음
 - 공급망 투명도 및 예측가능성 향상으로 재고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고객의 신뢰를 증가시키는 간접적 혜택이 있음
- Tier 2의 경우 Tier 1의 모든 혜택을 받으며 Tier 1 업체들보다 적게 화물검사를 받게됨
- 화물검사를 받을 때도 Tier 3 다음으로 먼저 검사를 받게 되며 반입 항구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 특권이 있음

32) 김진규 외,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 2) pp.167~188

33) 김진규 외,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9권 (2011. 2) pp.167~188

- Tier 3은 Tier 1, Tier 2보다 많은 혜택을 받게 됨
 - ATS 점수를 더 낮게 받아 화물검사 추가가 감소되며, 화물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가장 우선 배정이 됨
 - 공동 사고관리 훈련 참여에 참여할 수 있음
 - 위협 수준이 발생하면 미국 항구에서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하는 ‘Green Lane’ 사용권한이 부여됨
 -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시 우선 복구되는 무역경로이며 물품 선적시 검사 절차가 생략되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음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³⁴⁾

- 2014년 6월 기준으로 공인된 업체는 10,732개임
 - 수입자는 4,337개, 운송업체는 3,125개, 관세사는 858명, 외국 제조업체는 1400개, 화물혼재업자는 952개, 항만터미널운영업자는 60개임
 - Tier 3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는 334개임

3. 일본

가. 도입 배경

- 일본의 AEO 제도는 2007년 5~6월에 개최된 아시아게이트웨이 전략회의에서 시작됨
 - 아시아게이트웨이와 관련하여 무역절차개혁프로그램에서 일본 AEO 제도 추진을 하면서 구체화됨
 - 이 실현을 위해 보안과 법규준수도에 따른 관세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제도를 점차로 실시하게 됨
 - 국제 물류의 보안 확보와 무역원활화의 양립을 도모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34) 미국 세관(CBP) www.cbp.gov

것이 목표임

- 세계관세기구(WCO)가 채택한 SAFE framework에서 AEO 제도의 도입·구축에 따라 기본 방향을 설정함
 - 재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부성이 참여하고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민간단체들과 AEO추진관민협의회를 만들고 추진함
-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06년 3월에 제도가 도입되었고 대상을 넓혀감
 - 수입자는 2007년 4월, 창고업자는 2007년 10월, 관세사, 운송업자는 2008년 4월, 제조업자는 2009년 7월로 넓혀 제도 확대에 노력하고 있음

나. 공인대상

- 공인대상은 6개의 대상자로 분류됨
 - 수입업체
 - 수출업체
 - 보세구역운영인
 - 관세사
 - 보세운송업자
 - 제조업자

다. 공인기준 및 등급³⁵⁾

- 일본 AEO 제도의 인증기준은 크게 법규준수도 기록, NACCS 이용, 재무건전성, 법규준수도 프로그램 4가지로 분류되고 있음
 - 관세법 제67조의4(승인 요구 사항)와 시행규칙 제8조의3(규정준수 규칙의 기재 사항)에 정하여짐

35) 일본 세관 www.customs.go.jp

- 법규준수도에서 과거 일정 기간 동안 관세법령 관련 법규위반이 없어야 함
 - 과거 3년 이내에 관세 또는 수입품에 관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에 대해 체납한 적이 없어야 함
 - 폭력에 관련된 집단이나 일원이 아니어야 함
 - 관세법령을 위반한 임원, 법인, 대리인,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아야 함
 - 특례 수입자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특정 수출의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통관 프로그램인 NACCS(Nippon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NACCS)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 특정 수출, 수입신고를 실시하고 수출, 수입신고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고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

- 재무건전성은 세금납부에 문제가 없고 AEO 이행을 위한 투자가 가능해야 함

- 법규준수도 프로그램에서 법규준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서류의 작성, 보관 및 관리를 적절하게 해야 함
 - 수출과 수입의 신고, 총괄, 관리, 감사에 대해 부서, 책임자, 직위를 구성해야 함
 - 세관과의 연락체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함
 - 업무를 다른 자에게 위탁할 경우 업무의 운용에 관한 관리와 지도에 대한 사항을 수립해야 함
 - 임원과 종업원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칙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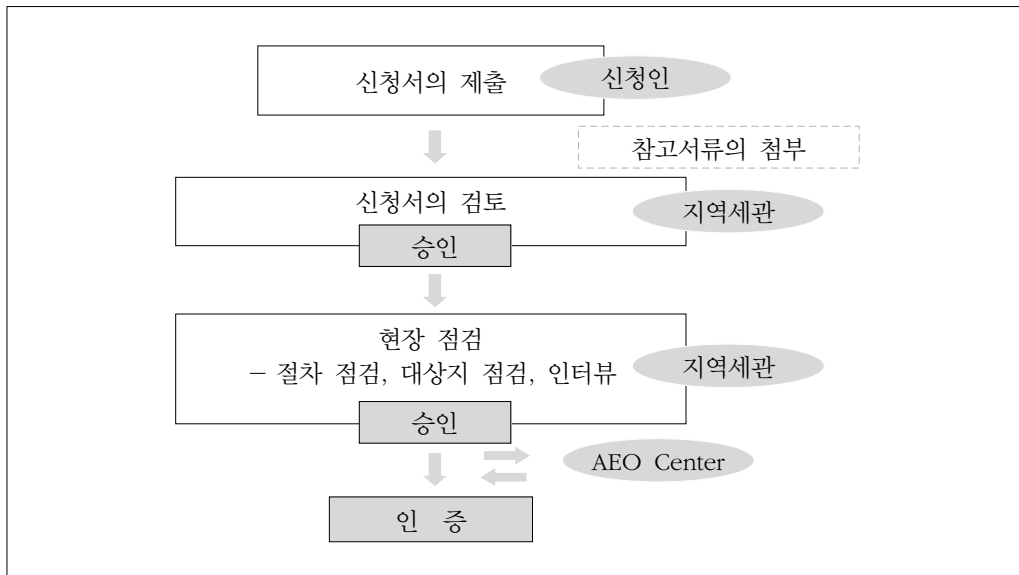
라. 신청준비와 절차

- AEO 인증 절차는 세관과의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심사 ⇒ 현장 심사

⇒ AEO 인증

- 신청서 C-9000호에 기재한 후 제출
-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서 신청을 해야 함
- 수출자가 사업지 관할 세관 특정수출신고제도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 전국 어느 세관에서라도 특정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그림 Ⅲ-1] 일본 AEO 인증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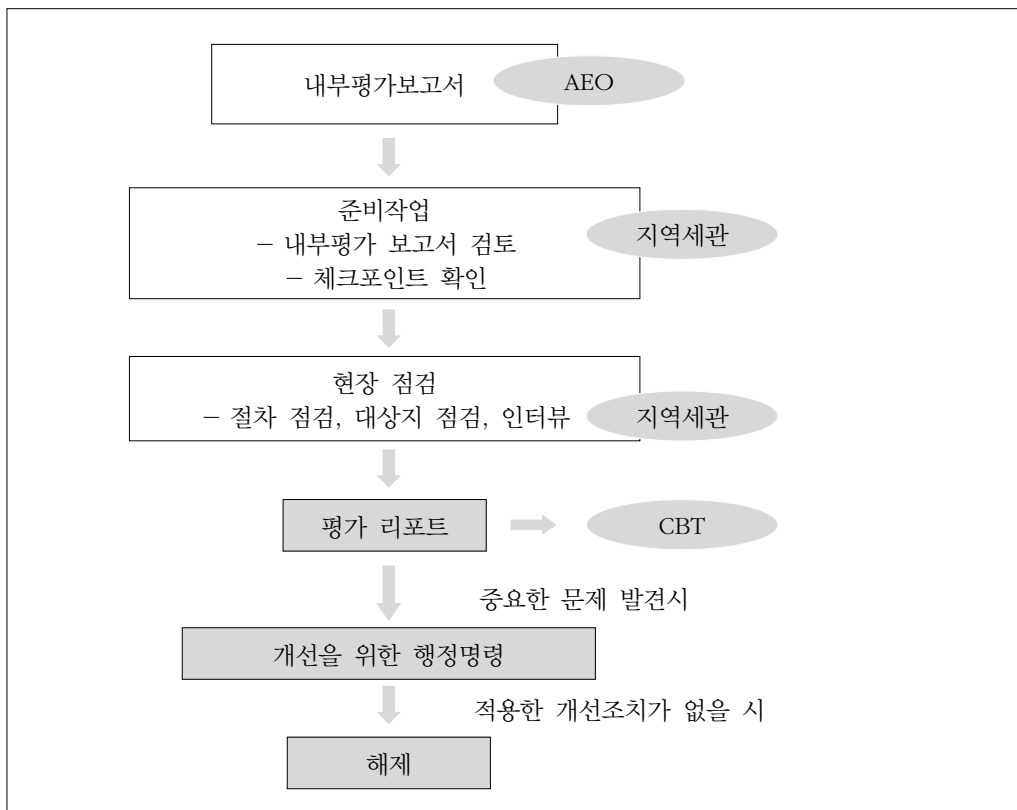


출처: 일본세관

- 기업들은 인증을 받은 후에도 세관에 의해 정기적으로 사후심사를 받아야 함
 - 1년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심사를 해야 함
 - 세관은 자가심사결과를 심사하고 절차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인터뷰 및 현지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개선관리를 지시하게 되며, 적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증 자격을 박탈당하게 됨
- 인증 유효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나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후 감사를 받게 됨

- 그 이후 3년마다 별도의 감사를 받아 인증 연장 여부를 검토함
- 일본의 AEO 경우 등급 없이 인증 및 비인증업체로만 구분하고 있음³⁶⁾
 - 평가기준에서 재무건전성 정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업체 별로 특성 및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임
 - 탄력적인 평가기준의 적용을 위해서 실제 AEO 인증을 위한 평가시 AEO 신청기업 과 세관 간의 상담 등 지속적인 조정단계를 거치게됨

[그림 Ⅲ-2] 일본 AEO 후속 검증 절차



출처: 일본세관

36) 정형곤 외,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KIEP, 2010년 10월

마. AEO 혜택

- 일본은 특정 수준에 따라 관련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당사자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음
 - 특정수출신고제도(Authorized Exporters' Program), 특례수입신고제도(Authorized Importers' Program), 특정보세승인제도(Authorized Warehouse Operators' Program), 인정통관업자제도(Authorized Customs Brokers' Program), 특정보세운송제도(Authorized Logistics Operators' Program)로 대상자는 5가지로 분류됨

- 특정수출신고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안관리 및 규정준수 체제가 정비된 자를 대상으로 함³⁷⁾
 - 먼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정수출업체가 보세구역 등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 화물이 놓여있는 위치 또는 화물의 선적(적재)을 예정하고 있는 항구(공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제도임

- 특정수출자가 되면, 수출화물 장소(자사 공장이나 창고, 항구 및 공항으로 이동 중에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음

- 세관 관련 검사 및 조사율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 세관의 심사·검사에서 수출업체의 보안관리 및 규정준수가 반영되기 때문에 수출화물의 신속하고 원활한 선박(탑재)이 가능하며, 리드 타임 및 물류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2001년 3월에 시작된 간이신고제도가 특례수입신고제도의 전신임
 - 간이신고제도에 보안과 관련된 제도를 추가하여 2009년 3월부터 특례수입신고제도 운용

37) 일본 관세법 제67조의3

- 특례수입신고제도는 납세 신고 전에 화물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임
 - 화물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의 체제가 정비된 자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특례 수입자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와 납세신고를 분리하였음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통관절차가 완료됨
 - 화물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르고 원활한 수령이 가능함

- 수입신고시 신고 항목이 줄어들며 납세신고는 추후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음
 - 수입신고시 납세에 대한 심사·검사가 기본적으로 생략되어 그 결과,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어서 재고관리가 한층 용이하게 됨

-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납세신고는 추후에 할 수 있음

바. 주요 인증기업 현황³⁸⁾

- 2014년 6월 기준 수출관련 인증업체는 236개, 수입관련 인증업체는 90개, 특정 보세승인자 관련 인증업체는 116개임
 - 통관업자 관련 인증업체는 86개, 보세운송업관련 인증업체는 7개로, 수출업자에 대한 인증비중이 큼

38) 일본세관

〈표 Ⅲ-1〉 일본 인증기업 현황

	업체명
특정수출자	DOWA METALTECH CO., LTD., FDK CORPORATION, GE Healthcare Japan Corporation, HOYA CORPORATION, IDEC CORPORATION, IHI Shibaura Machinery Corporation, JFE SHOJI TRADE CORPORATION, JUKI CORPORATION, JVC KENWOOD Corporation, JX METALS TRADING CO., LTD., JX Nippon Mining & Metals Corporation, KCM Corporation 등 236개
특례수입자	FDK CORPORATION, IHI Shibaura Machinery Corporation, NEC AccessTechnica, Ltd. POSCO JAPAN Co., Ltd., AISIN SEIKI CO., LTD. ALPS ELECTRIC CO., LTD., IKEHIKO CORPORATION ISHIKURA SHOTEN CO., LTD., ITOCHU Corporation, INOAC INTERNATIONAL CO., LTD. IBIDEN CO., LTD., IMATION CORPORATION JAPAN 등 90개
특정 보세송인자	CKTS Co., Ltd., JAL Cargo Service Co., Ltd., JX Nippon Oil & Energy Staging Terminal Corporation, OVERSEAS COURIER SERVICE Co., Ltd., Aichi kaiun Co., Ltd., AOKI TRANS CORPORATION, ASAHI UNYU KAISHA, LTD., AJINOMOTO LOGISTICS CORPORATION 등 116개
인증통관업자	DHL Global Forwarding Japan KK, KSA INTERNATIONAL INC., ASAHI UNYU KAISHA, LTD., AJINOMOTO LOGISTICS CORPORATION, ALPS LOGISTICS CO., LTD., ISHIKAWA-GUMI, LTD., ISEWAN TERMINAL SERVICE CO., LTD., Utoc Corporation 등 86개
특정 보세운송업자	OSAKI CORPORATION, KUSUHARA TRANSPORTATION CO., LTD., MOL Logistics (Japan) Co., Ltd., NISSEI SERVICE CO., LTD., NIPPON CONTAINER YUSO CO., LTD., Hirano Logistics Corporation, UTi (Japan) KK 등 7개

출처: 일본세관

4. EU AEO 제도³⁹⁾

가. 도입 배경 및 의의

- 9·11 및 유럽연합국 내에서의 각종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2004년 3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는 안전강화 조치를 결의하였고 2005년 무역공급망의 안전성

39) EC,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s 2007, 2014

및 무역원활화를 목표로 EU 세관 안전 프로그램(EU Customs Security Program, 이하 EU CSP)을 마련함

- EU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는 2006년 10월 관세법 시행령 (Community Customs Code⁴⁰) Implementing Provision, CCIP)을 통해 법제도가 마련되었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됨
- AEO 관련법은 EU 관세법(CCC)에 EU CSP를 토대로 한 안전 및 안보 개정안(Safety and Security Amendment)이 반영되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AEO 제도를 담은 것임
 - 관세법은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 사전 전자정보를 세관당국에 제공하고 (pre-arrival and pre departure declarations), EU 회원국을 위한 공동위험선별기준(common risk-selection criteria)에 기초한 공동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하며, 적법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거나 세관법규준수도가 뛰어난 무역업자들에게 간소화된 세관절차를 제공하는 AEO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2008년 AEO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2006년 1월~7월까지 11개 회원국⁴¹과 11개 기업들이 AEO 시범사업에 참여함
 - EU 회원국뿐 아니라 2007년 EU-미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출화물에 대한 세관통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함
- EU AEO 제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회원국별로 추진함
 - 모든 EU 회원국이 2008년 1월 1일에 시작한 것은 아니고, 회원국 준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09년 1월 1일자로 전 회원국이 시행하게 됨

40) 공동체관세규약(EU 관세법)

41)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 헝가리,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 EU의 AEO의 운영 주체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조세총국(DG TAXUD)이며 국가별로 관세 담당 부처 내의 AEO 담당부서가 세관에서 실무를 담당함
- EU AEO는 WCO SAFE Framework 기본을 충실히 수용하였으며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함

나. 공인대상

- 공인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제조업체, 포워드, 보세구역운영인, 관세사, 운송업체로 총 7개임
 - 미국이 수출업자를 공인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과 달리 EU의 AEO는 수출업자도 공인대상이 됨
- EU 비회원국 기업의 경우 자국과 EU 간 AEO 인증의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참여 가능함
 - EU 내에 사무소가 있고 통관 간소화 절차를 완료한 항공 및 선박 운송업자인 경우도 참여 가능함

다. 공인기준 및 등급⁴²⁾

- EU AEO 제도의 공인기준은 총기업정보, 법규 및 기준준수도, 기업의 회계 및 물류시스템, 재정능력(건전성),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됨⁴³⁾
 - 사업규모, 통관 사항 통계, 세관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적절한 세관 통제를 위한 상업 및 운송기록 관리체계 운영 여부, 재무건전성, 적절한 보안 및 안전 표준 확보 여부 등을 평가함

42) AEO GUIDELINES 2012(Rev) CH2.

43) AEO GUIDELINES 2007, 2012(Rev)

- 세관 요구 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은 경제운영자가 세관 및 세무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을 평가함
 - 경제운영자는 지난 3년간 세관 및 세무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기간이 3년이 되지 않는 운영자는 입수 가능한 기록에 근거해서 판단될 것이며, 보다 빈번하고 엄밀한 검토의 대상이 될 것임
 - 경제운영자의 소유주나/혹은 주요 주주, 그리고 법적인 대표자는 세관 및 세무관련 규정준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관 및 조세규정의 위반 정도는 각국의 처벌 법규에 따라서 판단될 것임

- 적절한 세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기록과 운송기록의 관리시스템에 관한 기준은 세무/관세 목적의 회계감사 기록의 존재 여부, 정보 접근성, 재고 관리, 상품 이동경로 추적 등의 기준임
 - 재고 관리, 상품의 이동경로 추적, 회계장부의 평가 및 유지
 - 적절한 행정 조직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존재
 - 수입/수출허가 처리 절차의 존재
 - 밀수 방지(anti-smuggling)와 관련한 기업 정책의 존재 및 임직원의 동 정책 및 관련 조치들에 대한 인식
 -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을 방지하고 회사 문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조치의 존재

-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은 경제운영자 및 필요시 모기업의 AEO 지위 신청 당시의 재정건전성이 증명되어야 함
 - 경제운영자는 어떠한 형태의 지불 불능 상태에 있어서도 안 됨

- 적절한 안보 및 안전기준은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조치 등을 포함함
 - 불법적인 진입과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되는 등 적절한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 선적 및 출하 장소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접근을 봉쇄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통제

조치

- 재화의 출입을 처리하는 조치들이 재화의 물리적 추가, 교환, 손실 및 선적 단위의 변경을 방지할 수 있을 것
 - 제한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수단
 - 보안 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 EU 공인은 별도의 공인 등급이 존재하지 않고, 공인과 비공인으로 나뉘
- 공인 등급은 없으나 AEO 인증 유형으로 신속통관(AEO-C), 안보(AEO-S), 신속통관/안보 통합(AEO-F) 유형으로 인증제를 운영 중임

라. 신청준비와 절차

- EU는 AEO 인증에 별도의 유효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EU 관련법령 주요 사항 개정 시 또는 인증기업이 AEO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을 경우, 담당부처가 재심사할 수 있음
- AEO 신청 절차는 공인신청 → 결격사유 조회 → 공인심사 → 공인통보⁴⁴⁾ 순서임
- AEO 공인 신청은 Form-C117을 이용하여 이메일, 팩스로만 발송 가능함
- 공인신청 후 신청서와 신청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해 조사하여 공인신청서의 접수 여부를 결정함
- 현장 심사 결과 적격한 업체에 대해 공인이 결정되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공인 여부가 결정됨
- 신청업체는 신청에 관련된 문서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현장 심사시 사업장소를 확인하면서 함께 심사함

44) AEO GUIDELINE 2012

마. 혜택

- AEO 신속통관 인증유형 업체는 EU 회원국 간 세관절차의 합리화 또는 공급망 보안에 관련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이 제공됨
 - 저위험 업체로 등록돼 서류 및 육안 검사 경감
 - 화물검색시 우선 처리
 - 통관검색 위치를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 원하는 곳에서 적은 비용 혹은 빠른 절차로 통관 검색 가능
 - 통관 간소화절차의 무심사 통과
 - 통관 제출 서류의 간소화
 - 통관 절차 결과 통보 순위의 선순위 배정
 - 관세청과의 협력관계 향상
 - 거래기업 간 신뢰 확보

- AEO 안전보안 인증유형 업체는 안전 목적의 위험 분석시 낮은 위험 점수 부여, 운송수단 사전 출발 또는 도착시 전송 데이터 항목의 감소 등의 혜택이 제공됨
 - 그 외에도 통제(검사)시 우선 검사 및 희망 검사장소 협의, 통제대상 선별시 사전 통지, 국제공급망상 테러공격이 발생할 경우 무역재개의 최우선권 보장, 선적 프로세스상 세관 간섭 최소화, 세관 단속 결과에 대한 호혜적 고려 등이 있음

- 신속통관과 안전보안의 혜택 외에도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프로세스 개선효과도 있음
 - AEO 공인은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 및 매출증대의 효과가 기대됨

- 또한 AEO 공인 획득을 위해 안전관리 투자가 늘어나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 안전관리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공급자의 검사비용 절감 및 협력 증대, 직원들의 안전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문제 감소, 공급망 파트너와의 안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음

- 상호인정협정(MRA)을 통해 AEO 상호 인정 국가에서도 AEO에 주어지는 혜택이 동일하게 인정됨
 - EU 회원국간뿐 아니라 AEO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국가와의 무역거래에서도 자국내에서 받는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바. 국가별 인증 현황

- AEO 인증 기업의 유형은 보안안전(Security & Safety), 세관간소화(Customs Simplification), 보안안전(Security & Safety)/세관간소화(Customs Simplification)통합유형 등 3가지로 나뉨
 - 보안안전 유형은 AEO-S로 표기, 세관간소화 유형은 AEO-C, 통합유형은 AEO-F로 표기함
 - 미국의 C-TPAT 제도가 안전관리기준만 존재하는 것에 대비해 EU의 AEO 제도는 안전개념과 함께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업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WCO Framework를 따르고 있음
- 2010년 기준, 약 3,700개의 AEO 공인기업 중 약 30%가 독일 기업이며, 그 다음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순서로 인증획득 수가 많음

〈표 Ⅲ-2〉 EU AEO 인증유형별 업체 수(2010년 기준)

번호	국가	AEO-C	AEO-S	AEO-F	총계
1	독일	414	17	764	1,195
2	네덜란드	29	26	327	382
3	프랑스	52	36	230	318
4	이탈리아	111	3	187	301
5	폴란드	133	6	118	257
6	스웨덴	97	6	135	238
7	영국	20	6	166	192
8	스페인	39	7	97	143
9	오스트리아	28	3	106	137
10	벨기에	2	12	97	111
11	체코	16	0	47	63
12	헝가리	12	5	35	52
13	아일랜드	2	0	41	43
14	덴마크	0	1	35	36
15	슬로베니아	4	3	29	36
16	포르투갈	30	0	5	35
17	핀란드	2	0	33	35
18	슬로바키아	7	0	17	24
19	루마니아	2	1	19	22
20	리투아니아	3	0	11	14
21	불가리아	1	0	12	13
22	룩셈부르크	0	2	10	12
23	에스토니아	0	1	8	9
24	라트비아	0	0	8	8
25	그리스	1	1	5	7
26	몰타	1	0	6	7
27	사이프러스	1	0	4	5
총계		1,007	136	2,552	3,695

자료: 관세청, AEO 확산을 위한 관세청과 기업간 협력방안 연구 2010

5. 중국 기업분류관리(AEO) 제도⁴⁵⁾

가. 도입 배경

- 중국 해관은 WCO에서 SAFE Framework를 마련⁴⁶⁾함에 따라 WCO 국제표준인 AEO 제도에 부합하는 기업분류관리제도(Measures of Classified Management to Enterprises, 이하 MCME)를 시행함
- 중국의 AEO(经认证的经营者) 제도, 즉 MCME 제도는 2008년 4월 1일 국내 제도로 정식 도입됨
 - 제도 도입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기업분류관리 방법(中华人民共和国海关企业分类管理办法)’과 관련 ‘기업경영상황보고(企业经营状况报告)’ 공고를 통합
- 1991년 3월부터 기업분류관리제도가 실시되고 있었으나, 현재의 MCME(AEO) 제도와 다른 점은 종전에는 4등급으로 기업을 분류한 반면 현재는 5등급분류제도로 개정된 것임
- 개정된 5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는 종전의 4등급 기업분류관리제도 상의 A, B, C, D류 기업 외에 WCO가 규정하는 공인기준에 부합하는 업체를 최우수기업(즉 AEO)으로 선정하여 AA류 기업으로 분류되도록 제도화함
 - 4등급은 A, B, C, D류이며 5등급은 AA, A, B, C, D류로 분류됨
- 중국의 AEO 제도는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촉진하고, 세관관리의 효과적인 시행과 수출입화물의 안전과 편리에 시행목적이 있음

45) 우리나라 관세청 AEO센터 자료실, 중국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기업관리방법, 한중 AEO 협력회의 설명자료, 중국 AEO 제도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김중훈, 2012), 중국 AEO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최준호, 2008)

46) 2005년 6월

- 중국은 AEO 제도가 시행되기 전 EU와 안전 ‘무역항로연합공동인식체결(2006)’을 통해 세관 정보를 공유함
 - 2007년부터 송수하인 및 세관 등 화물 공급망의 단계별 참여자와 협력체계를 도모하고 화물운송 및 통관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함
 - AEO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정으로 중국 심천의 3개 항구(염전, 사구, 적만)와 네덜란드와 로테르담, 영국의 펠릭스토우 항구 간의 사업으로, 동 시범사업은 상기 3개 항 간 시행됨

나. 공인대상

- 공인대상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가공무역기업 등 총 4개로 다른 AEO 도입국가에 비해 공인대상이 한정된 편임
- 우리나라는 AEO 대상자를 WCO 권고안에 가깝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에 반해 중국은 공인대상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다. 공인기준 및 등급⁴⁷⁾

- 중국 AEO 제도의 인증 기준은 일반요건과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 등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경영관리 및 무역안전요건은 기본사항, 재무현황, 인원현황, 내부관리현황, 수출입상황, 안전표준 등으로 총 6가지로 나뉨
 - 무역안전요건의 경우 WCO의 규정을 대부분 채택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함
- AEO 인증 일반요건(AA 등급)의 기준은 총 4개임
 - A등급으로서 1년 이상 관리적용 여부
 - 전년도 수출입총액 3,000만달러 이상

47) 중국해관총서(2012)

- 세관관리, 기업경영관리, 무역안전 요구사항이 기준에 충족
 - 경영관리상황보고, 회계심사보고서, 수출입업무상황표 보고
- 기업기본상황 기준은 기업설립연도, 기업영업유형, 기업 주요 무역방식, 기업소유유형, 기업의 직접대외투자기업 유무, 기업경영장소 등에 대해 심사함
- 기업영업유형은 생산형, 무역형, 생산무역혼합형으로 분류됨
 - 기업 주요 무역방식은 일반무역, 가공무역, 일반 및 가공 무역혼합으로 분류됨
 - 기업소유유형은 외상기업, 국영기업, 민영기업 등으로 분류됨
 - 기업경영장소는 지사 또는 자회사 유무에 따라 판별됨
- 기업 재무상황⁴⁸⁾은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상황, 자산·부채·자본상황 등을 평가하는 기준임
- 전년도 투자상황
 - 기업의 외상투자총액
 - 기업의 공상등록자금총액
 - 기업의 전년도 유동비율⁴⁹⁾
 - 기업의 전년도 자산부채율⁵⁰⁾
 - 기업의 전년도 총자산보수율⁵¹⁾
 - 기업의 전년도 고정자산 순잔고액(인민폐 기준)
 - 기업의 전년도 투자상황(인민폐 기준)
- 기업의 인원현황은 직원 수, 대표자 범죄 유무, 통관원 현황 등에 관한 심사임
- 기업의 직원 총수
 - 기업의 외국적 직원 수

48) 전년도 기업회계보고서 기준

49)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0) 부채총액/자산총액×100%

51) (세후이윤 + 소득세 + 이자지출) / 평균자산총액 × 100%

- 기업법정대표자의 형사범죄기록 유무
 - 기업의 세관업무책임자 현황
 - 성명, 국적, 신분증, 여권번호, 범죄기록 유무 등
 - 기업재무책임자 현황
 - 성명, 국적, 신분증 및 여권번호, 형사범죄기록 유무 등
 - 기업 통관원 현황
 - 성명, 신분증번호, 형사범죄기록 유무, 신규등록 유무 등
- 기업 내부관리 현황은 재무, 회계, 수출입업무, 인증, 유통, 수출입허가, 문서자료, 통관 등의 수출입관련 전반적인 기준을 포함함
- 재무장부 비치연도
 - 건전재무관리규정 유무
 - 창고 및 자재 규정 유무
 - 중개기구의 기간별 회계감사 이행 유무
 - 수출입업무 및 세관업무 담당 전문부서 유무
 - 명시적인 수출입업무처리지침 또는 규정 유무
 - 수출입 업무자료 파일 구축 유무
 - 관련 인증체제의 인증통과 유무
 - 화물의 내부유통과정기록 유무
 - 대리인 처리 세관업무에 대한 내부검사 절차 또는 규정 수립 유무
 - 수출입허가 관련 화물의 유무
 - 수출입허가 관리규정 수립 유무
 - 기업 및 무역 관련 문서자료와 데이터기록 보존 여부
 - 보존 비밀 제한 및 열람권한 수립 여부
 - 세관업무 집행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락원이 있어 세관과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여부
 - 통관부서가 실제 수입구매정보에 의거 통관을 진행하는지 여부

- 기업수출입상황은 수출입 내역에 대한 기록과 그에 따른 매출, 세금징수액 등에 대한 심사임
 - 전년도 수입상품 중 5위 이내의 외국공급자 명단(회사명 및 국적)
 - 전년도 수출상품 중 5위 이내의 외국수하인 명단(회사명 및 국적)
 - 기업의 가장 중요한 10대 수입상품(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 기업의 가장 중요한 10대 수출상품(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 주요 수출입납세상품(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 전년도 판매총액 중 외국판매총액비율(%)
 - 전년도 납부한 수출입관세 및 수출입단계 세관대징수액의 합계
 - 기업이 자체 통관신고 또는 위탁 통관신고 유무
 - 자체 신고가 아닌 경우 통관기업에 대해 무역활동자료 제공 여부

- 안전표준 기준의 경우 기본정보, 화물안전, 경영장소안전, 인원안전, 무역동반자안전, 정보안전 등 6개로 구성되며 하위 32개 항목으로 심사됨

〈표 Ⅲ-3〉 AEO 안전표준 기준

평가요건		세부평가사항
안전 표준	기본 정보	- 기업의 안전규정 수립 유무 - 직원 및 방문인원으로 하여금 상기 안전규정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 - 기업의 안전책임부서의 설치 유무 -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및 기록지침 유무 - 긴급안전상황 또는 재난 또는 테러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예방대책의 제정 유무 -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긴급사건처리방안의 훈련 및 측정 유무
	화물 안전	- 수출입화물에 대한 특별한 안전요구사항 유무 - 화물의 송수하 또는 운송시 모든 포장의 중량을 체크하고 표지를 붙이고 수량을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는지 유무 - 위험화물의 표지 유무 - 화물의 하역시 봉인용지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는지 유무 - 적절한 봉인용지의 관리 기록 및 절차가 있는지 유무

〈표 Ⅲ-3〉의 계속

평가요건	세부평가사항
경영 장소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경영장소에 도난방지시스템, 폐쇄회로감시시스템 또는 기타 안전보장시스템 설치 유무 - 기업이 경영장소에 진입하는 인원 및 차량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감시를 하는지 여부 - 정기적으로 경영장소의 안전시설에 대한 검사 실시 여부 - 안전관리인원의 출입구 감시 및 통제 유무 - 기업이 수출입화물창고 등의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지 유무 - 관련 구역에 제한표식 유무 - 이동화물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유무 - 화물을 창고에서 운반하여 나가는 경우 영수증 또는 운송서류 검사 여부
인원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직원에 대한 배경조사 유무 - 전문부서에서 신청인의 고용대상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 - 기업이 인원관리등급, 업무구역 및 권한등급 등에 따라 신분표지 시스템을 구별하여 설치하는지 여부 - 방문객 및 화물송달인 또는 화물인수인에 대한 등록 유무 - 안전, 화물처리 및 영수증발급인원이나 화물의 송수하구역에 있는 직원 등 모든 공급망에 관련된 인원에 대하여 의심화물의 식별훈련 실시 유무
무역 동반 자안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협상 진행시 무역파트너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 계약 체결 전에 무역파트너의 상업정보에 대한 심사 및 확인 실시 여부 - 계약이행과정에서 공급망의 안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 - 관련 평가와 심사 기록을 비치하는지 여부
정보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방화벽, 비밀번호 등 전산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의 정보안전정책, 절차 및 관련 지침의 보유했는지 유무 - 기업이 정보 결함 및 잘못된 정보의 입력을 피하기 위하여 화물통관정보를 분명하고, 완전하며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보유했는지 유무 - 정보 분실을 방지하는 지침 및 예비시스템의 보유 유무
기업에 존재하는 안전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	

자료: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2008a),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KIEP)

- 중국은 모든 기업을 AA, A, B, C, D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평가·관리함
 - AA 등급에 속해 있는 기업이 AEO 공인을 받는 업체임
 - 전국 해관은 통일된 기업분류를 실행, 순서에 따라 관리·조치함

- AEO 최초 신청업체는 C, D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B등급으로 분류하고, 매 1

년 경과시 상위등급 신청이 가능함

○ 단, 법규위반 적발시 바로 하위 등급으로 분류됨

- AA류 혹은 A류 기업이 밀수와 관련되어 수사 혹은 조사를 받거나 세관에서 상응한 등급별 관리조치를 잠정 중단한 경우, 중단기간 내에는 B류 기업의 관리조치에 따라 관리를 진행함

〈표 Ⅲ-4〉 신고단위의 분류

등급	신용도	통관적용 조치
AA(AEO)	신용이 매우 우수한 기업	상응한 통관편의
A	신용이 양호한 기업	
B	신용이 일반적인 기업	통상적인 관리
C	신용이 비교적 낮은 기업	엄격한 감시관리
D	신용이 매우 낮은 기업	

자료: 외교통상부(2012)

- 기업명칭 혹은 세관등록코드에만 변화가 발생했을 경우 그 관리등급은 계속하여 적용되며, 다만 아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아래 방식에 따라 조정을 진행함
- 기업이 존속분할될 경우, 분할 후 존속기업이 분할 전 기업의 주요 책임과 의무 혹은 채권채무 관계를 승계했을 경우 그 관리등급은 분할 전 기업의 관리등급을 적용하며 그 나머지 분할 기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함
 - 기업이 해산될 경우 해산된 기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함
 - 기업이 인수합병될 경우, 합병기업 관리등급은 합병 후 존속기업의 관리등급을 적용함
 - 기업이 신설합병될 경우 합병기업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기업으로 간주함
- 통관기업이 수출입업체를 대행하여 통관업무를 진행할 때 세관에서는 통관기업과 수출입업체가 각자 적용하는 관리등급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조치를 실시함

- 기업의 관리등급이 서로 다름으로 인해 실시하는 관리조치가 서로 저촉될 경우 세관에서는 아래 방식에 따라 실시함
 - 통관기업 혹은 수출입업체가 C류 혹은 D류인 경우 낮은 관리등급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실시함
 - 통관기업과 수출입업체 모두 B류 혹은 그 이상인 관리등급인 경우 통관기업의 관리 유형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실시함

- 가공무역경영기업과 위탁가공을 받은 생산기업의 관리등급이 서로 다를 경우 세관에서는 동 가공무역업무에 대하여 낮은 기준의 관리등급에 따라 상응한 관리조치를 실시함

〈표 Ⅲ-5〉 중국 기업분류관리 등급별 요건

등급	내용
AA류 기업으로의 승격기준	규정 제6조에 의하면 동시에 4개 항목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① A류 관리기업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할 것 ② 전년도의 수출입총액이 3,000만달러 이상일 것 (단, 이른바 중서부지역에서는 1,000만달러가 될 것) ③ 세관의 감찰을 받고, 세관관리, 기업의 경영관리와 무역상의 안전요구에 합치할 것 ④ 세관에 매년 '經營管理狀況報告' ¹⁾ 와 회계사무소가 발행한 전년도의 회계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매년마다 '輸出入業務情況表' ²⁾ 를 보고할 것 상기와 같지만, 이상의 4개 항목에 추가하여 당연히 A류 기업을 위한 조건도 모두 구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A류 기업으로의 승격조건 (수출입 기업의 경우 이하 같음)	규정의 제7조에 의하면 전부 11개의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① B류 관리기업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할 것 ② 연속해서 1년, 밀수행위를 포함한 세관의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을 것 ③ 연속해서 1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의 수출입행위에 의해 세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예전에는 없었음.) ④ 연속해서 1년, 납부해야 할 세액, 벌금을 체납하지 않을 것 ⑤ 전년도의 수출입 총액이 50만달러 이상일 것(예전에는 3,000만달러 이상) ⑥ 전년도 수출입 통관의 오진율이 3% 이하일 것 ⑦ 회계제도가 완비되어 있고, 업무기록이 사실에 기초하여 완전할 것 ⑧ 세관관리에 자주적으로 협력하고, 행해야 할 세관수속을 바로 수행하고, 제출된 각종 서류가 진실되고, 완비되어 유효할 것 ⑨ 세관에 매년 '經營管理狀況報告'를 제출할 것 ⑩ 중국세관의 '輸出入貨物受發送人通關登錄登記證書' ³⁾ 를 적절히 갱신하고, 혹은 변경사항은 바로 수속을 할 것 ⑪ 타관계관청(상무, 인민은행, 공상, 세무, 품질검사, 외환등)에서 불량기록이 없을 것

〈표 Ⅲ-5〉의 계속

등급	내용
B류 관리대상이 되는 기업의 조건	① 처음 세관등록한 경우 ② 처음 등록한 후 관리유형을 조정하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③ AA류와 A류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④ A류 적용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C류 기업으로의 격하(강등) 기준	규정 제8조에 의하면 하기의 정황에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C류 관리가 적용된다. ① 밀수행위가 있었던 경우 ②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세관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고, 혹은 1년 이내에 처벌받은 벌금의 총액이 50만원인 이상인 경우 ③ 1년 이내에 2회 이상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화물을 수출입하여 세관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④ 납부해야 할 세액, 벌금의 체납액이 50만원인 이하인 경우
D류 기업의 격하(강등) 기준	규정 제9조에 의하면 하기의 정황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D류 관리가 적용된다. ① 밀수범죄를 구성한 경우 ②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밀수행위가 있는 경우 ③ 납부해야 할 세액, 벌금의 체납액이 50만원인 이상인 경우 이상은 수출입기업의 조건이지만, 통관기업에 대해서도 거의 같은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주: 1) 경영관리상황보고
2) 수출입업무상황표
3) 수출입화물수발송인통관등록등기증서

자료: 중국해관총서

라. 신청 준비와 절차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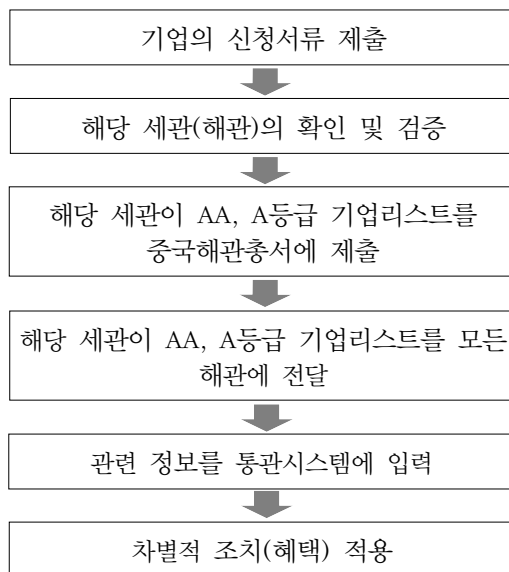
- 중국에서 AEO 공인(AA등급)신청을 하려면 AEO 기업의 요건을 갖춘 후, 등록지 세관을 거쳐 직속세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는 AA등급 신청서, 경영관리 현황 평가보고서, 회계법인이 발행한 전년도 감사보고서임
- AA등급업체의 경우 세관본부의 심사비준이 필수이며, 기존 C, D등급이 등급 상향시에는 기업이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세관이 1개월 내에 결정함

52) 한-중 AEO MRA 체결에 따른 공인기업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최준호(2013), 중국 해관 총서

- 중국의 AEO 인증 절차는 업체의 공인 신청 → 세관이 신청서 접수 → 심사 → 신청수리 결정서 발급 및 직속 세관보고 → 등급 결정임
 - AA등급 및 A등급 유형 요건을 만족하는 업체들이 등록지 세관에 서면으로 AEO 공인을 신청함
 - 세관은 신청서 접수 후 공인 자료와 법정 형식의 부합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업분류 관리신청 접수 결정서’를 발급하고 직속세관에 보고함
 - 보고를 받은 직속세관은 AA등급의 경우 6개월, A등급의 경우 3개월 내에 기업의 분류에 대한 결정을 내림

- 만약 AEO 신청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심사 없이 신청이 기각되며, 1 개월 이내에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함
 -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① 신청서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AA기업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서를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밀수혐의나 세관관리 감독규정에 위반하거나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어 수사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

[그림 Ⅲ-3] 중국 MCME 신청 절차



마. 혜택

- AEO 공인업체(AA류)는 A류 기업에 제공하는 모든 혜택에 추가적으로 통관현장 검사 제외, 세관절차 종료 전 담보제공 후 우선 화물반출, 세관의 신속통관시범기업으로 우선 선정, 수출입상품 품목분류 및 분석절차 우선처리 등의 혜택을 제공함
 - A류 기업의 경우 근무시간 외 및 공휴일 예약통관 우선처리,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 우선 처리, 화물신고·검사·통관 우선 처리, 생산과정이나 하역시 세관원 파견 검사, 내륙지 신고, 개항지 통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됨
 - C, D류 기업은 평가, 품목분류, 원산지, 세율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D류 기업에 대해서는 전량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수출입상품의 수취, 발송인, 대리인 소재지 세관 중 한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세관 신고·통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 신속 통관뿐 아니라, 기업 공인업체의 통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세관 전문요원을 파견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세관 전문직원을 파견하여 기업의 세관관련 문제를 지원함
 - 통관현장에서 물품검사가 불편한 경우 기업신청에 의거 세관직원을 기업에 파견하여 생산과정 또는 하역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함
 - 전자장부 네트워크 관리를 우선 실행함

- 가공무역기업에 대해서는 은행보증금대장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가공무역기업은 세관 파견 직원이 공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거나 주관세관이 컴퓨터 네트워크로 보세공장을 관리하는 경우와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특수업종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항공기 선박 자동차 등 특수업종의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경우 중 1 개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제도 미실행함
 - 가공무역기업에 대해 일반적인 공장검사 실시를 제외함
 - 가공무역등록, 변경, 정산(核消)신고 등 우선 처리함

- 중국 해관은 향후 A류 기업에만 허용되던 P/L 통관을 B류 기업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허용되지 않던 수출입 검역대상 물품, 항공화물, 타지역 등록 기업에 대해서도 P/L 통관을 허용할 예정임
- 2015년부터 P/L 통관 전면시행 예정임

IV. 국제 비교 및 결론

1. 국제 비교

가. AEO 제도의 일반현황 국제 비교

- AEO 명칭은 도입시점 및 자국의 실정에 따라 다름
 - 미국의 AEO 공식명칭은 C-TPAT(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이며, 중국은 MCME(Measures of Classified Management to Enterprises)임

- 미국의 경우 2001년 11월 최초로 AEO 제도를 도입하였고, 중국은 2008년 4월, EU는 2008년 11월 도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4월 상대적으로 늦게 시행함

- AEO 인증 대상의 경우 모든 국가들이 수입업체와 수출업체를 포함하여 지정함
 - 미국의 경우 종전에는 수입업체만 공인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2014년 7월부터 공인대상에 수출업자가 포함됨
 - 공인대상의 범위는 수출 시작 지점부터 물품 도착까지 광범위한 물품공급망상의 운영대상을 포괄함

- 공인대상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대상 범위가 넓은 편임
 - 우리나라의 공인대상은 총 9개이며 하역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항공사 등을 포함함
 - 중국은 수출, 수입업체, 관세사, 가공무역기업 4개의 대상자만을 포함하므로 가장 범위가 좁음
 - 제조업자의 경우 EU와 일본에서는 공인대상이나 미국은 외국의 제조업자가 공인대

상이며 한국은 제조업자가 포함되지 않음

- 2014년 기준 인증기업의 수는 EU가 11,791개로 가장 많음
 - 미국은 10,732개, 중국 2,337개, 우리나라 539개, 일본 535개 순임

- 우리나라는 9개국과 AEO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이하 MRA)을 맺어 2014년 기준 전 세계 최다 AEO MRA 체결국임
 - 체결국은 캐나다·싱가포르·미국(2010년), 일본·뉴질랜드(2011년), 중국(2013년), 홍콩·멕시코(2014년), 터키(2014년)임
 - 미국은 뉴질랜드(2007년), 캐나다·요르단(2008년), 일본(2009년), 우리나라(2010년), EU·대만(2012년) 등 7개국과 체결함
 - 일본은 뉴질랜드(2008년), 미국(2009년), EU·캐나다(2010년), 우리나라·싱가포르(2011년), 말레이시아(2014) 등 7개국과 체결함

-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공인대상(9)에 대해 동시에 AEO 제도를 적용함
 - 다른 주요국들은 AEO를 수출입자에게 우선 실시 후 단계적으로 여타 공인대상으로 확대함

- EU의 경우 AEO 인증유형이 AEO-C(세관간소화), AEO-S(보안), AEO-F(세관간소화 및 보안) 3가지로 구분됨
 -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 세관간소화 및 보안 유형은 없음

- 중국은 공인등급이 5등급(AA, A, B, C, D)으로 분류되며, EU나 일본의 경우 인증과 비인증으로만 구분됨
 - 우리나라와 미국은 기준에 따라 3등급(Tier 1, Tier 2, Tier 3)으로 나누어 차별적 혜택을 부여함

- 중국의 경우 AA, A, B, C, D 등 5등급 중 AA(AEO 업체)류 기업에 한해서만 AEO 업

체로 승인되어 관련 혜택이 제공됨

- AEO 최초 신청업체는 최초 B등급으로 분류되고, 매 1년 경과시 상위등급 신청이 가능함⁵³⁾
- A등급도 통관상의 편의는 제공되나 AEO 기업(AA 등급)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모두 제공되지는 않음

□ EU는 별도의 인증 유효기간은 없으나, EU 관련법령 주요 사항 개정시 또는 인증기업이 AEO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못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 담당부처가 재심사함⁵⁴⁾

- 일본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심사를 하며 인증 후 2년 이내 사후감사를 받고 3년마다 감사를 함
- 우리나라는 3년 후 갱신 심사를 거침
- 중국은 1년마다 상위등급으로 신청 가능함

53) 단 최초 B등급 분류시 C, D등급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54) KOTRA, globalwindow 해외투자속보, 네덜란드, EU 공인경제운영자(AEO)제도 수용도 증가 (2008년 8월)

〈표 IV-1〉 AEO 특징 국제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중국
명칭	AEO	C-TPAT	AEO	인정사업자 제도(AEO)	기업분류 관리제도 (MCME)
시행시기	2009.4	2001.11	2008.1	2007.4	2008.4
대상	수입/수출	수입/수출	수입/수출	수입/수출	수입/수출
유형	안전관리 무역 원활화	안전관리 무역원활화	안전관리 무역원활화 안전관리· 무역원활화	안전관리 무역원활화	안전관리 무역원활화
공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운송 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업체 수출업체 모든 운송업자 항만운영 당국과 터미널 운영업자 멕시코에 있는 장거리 운송업자 관세사 외국제조업자 제3 물류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수입업체 제조업체 포워드 보세구역 운영인 관세사 운송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수입업체 창고업자 보세운송인 관세사 제조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가공무역기업
공인등급	3등급 (AAA, AA, A)	3등급 (Tier1, Tier2, Tier3)	없음 (인증, 비인증)	없음 (인증, 비인증)	5등급 (AA, A, B, C, D)
인증유효기간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년 후 갱신 심사 변동사항 보고 (1개월 내) 자체정기점검 보고(연1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검증 후 3년 이내에 재검증을 하며 이를 통해 연장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받은 후 2년 이내 사후감사 3년마다 감사 1년에 최소 1회 이상 자가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마다 상위등급 신청 가능 (신청 최초등급 B)
주요 인증기업 현황 ⁵⁵⁾ (2014년 기준)	539개	10,732개	11,791개	535개	2,337개
MRA	9개국	7개국	4개국	6개국	2개국

55) AEO 진흥협회 전 세계 AEO 추진현황

나. AEO 제도의 공인기준 국제 비교

- 공인기준의 경우 WCO 공인기준(Section)을 기본으로 하나 국가별 특성에 따라 하위 기준항목(sub-section)이 차이가 있음
 - WCO가 제시한 공인기준은 세관의무사항 성실이행, 적절한 기업기록의 관리시스템, 재정적 실행가능성, 관계기관의 소통과 협력, 교육 훈련 시스템의 구축, 정보의 교환·접근·보안시스템 구축, 화물·운송·건물·인적(개인, 무역파트너)보안, 위기관리, 보안관리 시스템의 측정·분석·개선 등임
 - 우리나라, EU, 일본의 경우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등의 공인기준이 동일함
- 일본의 경우 재무건전성 공인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음⁵⁶⁾
 - 구체적인 명시가 없는 이유는 세관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업체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임
 - 수출입 통관 프로그램인 NACCS 이용 여부가 공인기준으로 적용됨

〈표 IV-2〉 공인기준 국제 비교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준수 • 내부통제시스템 • 재무건전성 • 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파트너 요구사항 • 컨테이너 보안 • 물리적 접근통제 • 직원·절차 • 물리적 보안 • 정보기술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정보 • 법규 및 기준 준수도 • 기업의 회계 및 물류 시스템 • 재정능력(건전성) • 안전 및 보안 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규준수 • NACCS 이용 • 재무건전성 • 법규준수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요건 • 기본사항 • 재무현황 • 인원현황 • 내부관리현황 • 수출입상황 • 안전표준

- 공인기준 중 안전관리기준은 국가별로 평가하는 항목이 유사하며, 중국은 총 6개 부문에 32개 하위항목으로 심사되는 등 세부기준 항목이 가장 많은 국가임
 - 중국의 안전표준의 기준은 기본정보, 화물안전, 경영장소안전, 인원안전, 무역동반자안전, 정보안전 등임

56) 정형곤 외, 『무역원활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관세행정 협력방안: AEO 제도의 상호인정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KIEP, 2010년 10월

- 화물안전관리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특별한 안전요구사항 유무, 위험화물의 표지 유무, 화물의 하역시 봉인용지의 번호를 확인하고 있는지 유무, 적절한 봉인용지의 관리 기록 및 절차가 있는지 유무임
 - 미국은 컨테이너 보안, 물리적 접근 통제, 직원보안, 절차적 보안, 정보기술 보안, 보안 훈련 등 9가지 부문에서 28개의 세부 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EU의 보안관련 기준은 보안 및 안전표준 확보 여부로 물리적 보안, 접근 통제 조치 등을 포함함
 - 일본의 안전관리기준의 경우, AEO가 아닌 별도의 법규정에 제정되어 있음
 - 별도 법규정의 내용은 체계정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서 거래업체 관리 및 인사관리 기준, 화물관리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서 수출화물의 무결성 확보, 잠금장치 펜스 등에 관한 규정, 불법침입 방지, 세관과의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에서 운송수단관리, 취급절차관리, 보고 및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에서 교육훈련 등임
 -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세부기준은 시설, 직원, 협력업체 관리 등을 통해 수출입 화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출입구 숫자, 경보장치와 비디오카메라, 주차 통제, 건물의 안전, 잠금장치관리, 조명관리 등 8개 부문에서 22개임
- 안전관리기준에 있어 우리나라, 중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정보안전·정보보호, 무역동반자·거래업체관리, 시설장비·경영장소안전기준에 대해 평가하고 있음
- 정보안전·정보보호에는 전산시스템 및 비밀번호 보호, IT 보안정책, 정보의 불법 접근과 변조방지, 계정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됨
- 우리나라와 미국은 절차적 보안·관리에 물품수송, 화물보관, 처리, 모든 과정의 보안에 대한 절차가 기술되어 적용대상 범위가 넓음
- 중국의 경우 교육과 훈련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물품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실시와 참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중국의 경우 인사관리 부문에서 직원훈련으로 한 항목만 제시하고 있음

〈표 IV-3〉 안전관련 기준 국제 비교

우리나라(8)	미국(9)	EU(4)	일본(4)	중국(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업체 관리 • 운송수단 등 관리 • 출입통제 관리 • 인사관리 • 취급절차 관리 • 시설과 장비 관리 • 정보기술관리 • 교육과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보안 • 물리적 접근통제 • 직원 보안 • 절차적 보안 • 물리적 보안 • 정보기술 보안 • 사업파트너에 대한 요구사항 • 보안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보안 • 접근 통제 조치 • 재화의 출입을 처리하는 조치 • 보안 • 안전관련 직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업체 및 인사관리 • 화물관리- 수출화물의 무결성 확보 • 운송수단관리, 취급절차관리 •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정보 • 화물안전 • 경영장소안전 • 인원안전 • 무역동반자안전 • 정보안전

다. AEO 제도의 혜택 국제 비교

- AEO 인증 업체에는 공통적으로 통관 검사 축소 및 비용 절감 등의 혜택이 주어짐
 - 통관절차 축소 및 비용절감 혜택 외에도 우리나라, 미국, 중국은 비상시에 우선통관 조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본은 AEO 인증기업의 경우 화물 도착 전 통관절차 완료와 신고 및 납세 전 화물인수 허가제도가 적용되어 AEO 인증 획득에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경우 담보제공 없이 신고 수리가 가능함
- 중국의 경우 AEO(AA, A류기업) 인증업체를 위한 전용창구가 있어 우선 통관이 가능함
 - 동 혜택은 전용창구 이용시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으며, 향후 A류 기준 미달 업체에도 혜택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미국의 경우 무역공급망의 안전관리 강화를 중점적으로 AEO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AEO 인증 기업에 공급망 보안전문가 지정, 공급망 보안세미나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됨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와 달리 AEO 인증 업체에 기획심사, 법인심사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동 조치는 기업심사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거함
 - 단, 현행법 및 중대·명백한 위법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본부세관 종합심사부서와 협의하에 심사 조치됨

- 또한 우리나라 관세청은 향후 AEO 업체에 원산지증명서 심사 생략 등 폭넓은 혜택 제공을 통한 AEO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임⁵⁷⁾
 - 복잡한 원산지증명 발급절차가 보다 간소화되고 발급기간도 줄어들어 AEO 인증업체로서의 추가적 가입 유인이 됨

〈표 IV-4〉 혜택 국제 비교

	우리나라	미국	EU	일본	중국
신속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검사율 축소 • 서류심사 간소화 • 우선통관 • 세관연락관지정 • 비상시특혜조치 • 갑형 • 법인심사 제외 • 과태료 경감 • 요건확인필요품목에 대해 세관장 확인 생략 • 할당관세 대상물품, 특송물품, 우편물품 수입신고시 즉시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검사율 축소 • FAST Lane 절차를 통한 신속한 국경 화물 처리 • 비상시 Green Lane 이용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 및 육안 검사 경감 • 화물검색시 우선 처리 • 통관검색 위치 자율지정 • 무심사 통과 • 통관 제출 서류의 간소화 • 통관 절차 결과 통보 순위의 선순위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검사율 축소 • 화물 도착 전 통관절차 완료 • 신고 및 납세 전 화물 인수 허가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전문요원 지정 • 전용창구를 통한 우선 통관 • 긴급상황시 우선 통관조치(천재지변, 파업, 테러 등) • 수출입 검사율 대폭 축소
납세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담보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심사생략 대상 기업범위 확대(AA->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 경감해 줌 • 공급망 보안전문가 지정해 줌 • 공급망보안세미나 참여자격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통관 교육실시 및 평가

57) 관세청 보도자료 2014.4

2. 결론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WCO Safe Framework를 마련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AEO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증업체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63개국이 AEO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그 외 164개국이 WCO에 AEO 도입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AEO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AEO의 경우 각국의 국가실정에 맞추어 도입하였기 때문에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도입 시기도 다름
 - 미국은 동 제도를 2001년 11월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명칭은 C-TPAT이고 중국은 2008년 4월 도입하였으며 명칭은 MCME임
-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공인대상이 가장 넓으며 중국은 공인대상 범위가 좁다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은 최근에 공인대상에 수출업자를 포함시켜 총 8개 대상에 대해 AEO 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공인대상이 4개로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가공무역 기업에 한정하고 있음
- 이처럼 AEO 제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AEO 제도시행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보임
 -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검사비용이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낮은 편으로 동 제도 적용시 가시적인 혜택이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을 판단하자는 의견도 있음
- 또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공급망 참여 당사자의 보안 역시 강화해야 하며 관세청을 중심으로 AEO 제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경제권별 AEO MRA 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MRA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총 9개국과 MRA 체결을 맺고 있음
- 보안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검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검사비율 강화가 필요함

- 본 연구는 국가별로 공인기준의 특징을 비교하였으나 향후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공인 기준 등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지 못한 점에 한계가 있음
 - 본 보고서의 연구국가들의 공인 기준은 유사하나, 국가별로 특수성이 존재하여 적용되는 세부항목이 상이하여 정책적 판단의 어려움이 있음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공인기준 가이드라인 완화에 대해서만 분석하였으나, 향후 다른 국가의 AEO 중소기업 지원정책 비교연구를 통해 중소수출업체 지원정책에 대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수출업체의 AEO 가입 확산을 위한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별도의 공인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음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AEO 제도 도입 국가들이 중소수출업체에 부여하는 혜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행될 수 있음

참고문헌

- 관세청,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 정책브리핑」, 2010
- 관세청, 「AEO 공인제도 순회 교육자료」, 2010
- 관세청, 「AEO 제도 현황」, 2010
- 관세청, 「AEO 제도 설명자료」, 2009
- 김진규 · 김현지,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의 AEO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혜택 및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2011
- 남풍우 · 안재진, 『관세법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8
- 박정희 · 최석범, 『무역원활화를 위한 국내 AEO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13
- 백훈염, 『한국 AEO 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3
- 안재진, 『국경안전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미국 및 EU의 공급망 보안제도 연구』, 2007
- _____, 『공급망 보안 강화 및 무역원활화를 위한 EU의 AEO 제도 운영과 시사점』, 2007
- 한상현 · 최준호, 『WCO 표준(Standard)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보안조치 강화 방안』, 2007
- 천홍욱, 『한국 수출입기업의 AEO 제도 도입요인이 활용수준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12
- 최준호, 『한-중 AEO MRA 체결에 따른 공인기업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2013
-
- 관세청 AEO센터
(사)한국 AEO 진흥협회
미국 세관 www.cbp.gov
일본 세관 www.customs.go.jp
세계관세기구 www.wcoomd.org

중국해관총서 www.customs.gov.cn

Mariya Polner, Compendium of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Programmes,
2010

EU AEO Guideline 2007, 2012

EC(European Commission), Supply Chain Security, 2007

EC(European Commission) TAXUD, Authorised Economic Operators Guideline
Working Document, 2006

WCO, Safe framework of standards, June 2012

부록 I. EC 법령

REGULATION (EC) No 648/20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April 2005 amend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EU의회와 각료이사회(Council)는 유럽 공동체를 설립한 조약, 특히 26, 95, 133, 135조(條)를 고려하고, 위원회(Commission)의 제안을 고려하고, 유럽 사회경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당 조약의 251 조가 지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 (1) 이사회규칙(EEC) 2913/92는 수출입되는 상품의 세관 처리에 관한 규칙에 대해 규정한다.
- (2) 유럽 공동체 세관 영토를 왕래하는 상품에 대한 세관 통제에 있어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체 내에 동등한 세관 통제 수준을 수립하고, 회원국에 의한 조화로운 세관 통제 적용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회원국은 이러한 통제를 적용하는 데 주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통제는 공동체 및 그 시민과 교역국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품과 경제운영자(economic operator)의 선별에 있어 공통적으로 합의된 규정과 위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회원국과 위원회는 공동체 전반에 적용되는 리스크 관리 체계를 도입해 공동 목표를 지지하면서 우선적인 목표를 효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세관 통제와 합법적 무역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또한 공인된 경제 운영자(Authoriz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공통된 기준과 조화로운 필요조건을 제공하고, 그러한 기준과 조건이 조화롭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회원국에 공통된 리스크관리 체계 수립이 회원국들의 임의 점검(spotcheck)에 의한 상품 통제를 금지해서는 안된다.
- (3) 회원국들은 통제 시스템, 재정 건전성 및 준수 기록에 있어 공통 기준에 부합할 경우

어떠한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인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일단 특정 회원국에 의해 부여되면 다른 회원국들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관 법규 적용에 있어 간소화(simplifications)의 혜택을 자동적으로 이들 운영자에게 부여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회원국들은 공인된 경제 운영자들이 특정 간소화 작업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들 운영자들이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간소화 사용 요청을 검토함에 있어 다른 회원국들은 운영자의 통제 체제, 재정 건전성, 혹은 준수 기록을 재검토할 필요는 없는데, 이는 이것이 이미 지위를 부여한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간소화 작업을 위한 필요조건을 확인하는 작업은 거처야 한다. 다른 회원국 내에서 간소화를 활용하는 것은 관련 당국 간 합의에 의해서도 조율될 수 있다.

- (4) 세관 법규 적용의 간소화는 공동체 세관 코드에 정의된 세관 통제, 특히 안전과 안보와 관련한 통제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통제는 세관 당국의 책임이며,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세관 당국이 위험을 분석하고 안전과 안보와 관련된 통제에 있어 경제 운영자에게 원활화(facilitation)의 편의를 허용할 때 하나의 요소로서 인정되어야 하지만 통제권한 자체는 존속된다.
- (5) 수출입 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련 정보는 관련 회원국 및 위원회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통되고도 안전한 체계가 구축되어 관련 당국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전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3국도 공유할 수 있다.
- (6) 경제 운영자에 의해 세관 당국에 제공되는 정보가 그 회원국이나 다른 회원국의 세관 이외의 당국, 위원회, 혹은 제3국의 당국에게 공개될 수 있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자료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의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가 1995년 10월 24일 공포한 지침(Directive) 95/46/EC와 공동체 기구 및 단체에 의한 개인자료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2000년 12월 18일의 Regulation(EC) NO45/2001이 해당 당국이나 공동체 세관법에 따라 자료를 받은 여타 당국이 개인 자료를 처리하는데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 (7) 적절한 리스크에 기초한 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나 선박이 당해 영토 내에 정류하지 않고 단순히 통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의 세관 영토에 진입, 진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도착 전 혹은 출발 전 정보에 대한 요구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는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오기 전이나 나가기 전에 취득 가능해야 한다. 상품·운송·경제 운영자 종류에 따라, 혹은 특정 안보 조항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간 틀과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같은 요구사항은 자유무역지대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도 도입되어야 한다.
- (8) 이 같은 목적에 따라 Regulation (EEC) No 2913/9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Regulation (EEC) No 2913/92 개정 사항

제1조

1. 제4항은 아래와 같이 개정된다.

삽입 문구:

- (4a) '진입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entry)는 세관 당국이 세관법규에 따라 지정한 사무소로,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온 상품은 지체없이 이 사무실로 이송되고 여기에서 적절한 리스크에 기초한 진입 통제를 받아야 한다.
- (4b) '수입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import)는 세관 당국이 세관법류에 따라 지정한 사무소로, 여기에서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온 상품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기반 통제를 포함한 세관이 승인한 처리 혹은 사용(customs approved treatment and use)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 (4c) '수출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export)는 세관 당국이 세관법류에 따라 지정한 사무소로, 여기에서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기반 통제를 포함한 세관이 승인한 처리 혹은 사용 절차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 (4d) '출구 세관 사무소'(Customs office of exit)는 세관 당국이 세관 법규에 의해 지정한 사무소로,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를 나가기 전에 이 사무소로 제출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상품들은 출구 절차의 완료와 관련된 세관 통제와 적절한 리스크 기반 통제를 받을 것이다.

14항은 다음 문구로 대체된다.

(14) ‘세관 통제’(Customs controls)는 세관 당국이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에 이동하는 상품의 진입, 진출, 운송, 이전 및 최종 용도 그리고 공동체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품의 존재를 통제하는 세관 법규와 기타 법령의 정확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는 구체적 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상품 조사, 제출 자료 확인, 전자적 혹은 수기 문서의 존재 및 진위 확인, 회계 및 기타 기록의 조사, 운송수단의 검사, 수화물의 검사, 공식적인 조사 및 유사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아래 항목이 추가된다.

(25) ‘리스크’(Risk)는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에 이동되는 상품의 진입, 진출, 통과, 이전, 최종 용도와 관련하여 아래의 각 항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과 공동체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상품의 존재를 의미한다.

- 공동체 혹은 국가 조치의 정확한 적용을 배제하거나
- 공동체와 그 회원국의 금융적 이익을 침해하거나
- 공동체의 안보와 안전, 공공 위생, 환경 혹은 소비자에게 위협을 제기하는 것

(26)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라 함은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리스크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료 및 정보 수집, 리스크 분석 및 평가, 조치의 기술 및 이행, 그리고 국제적, 공동체적, 국가적 자원과 전략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 및 검토가 포함된다.

2. 다음 장과 조항이 삽입될 것이다.

1A장

제5조 a항

1. 세관 당국은 필요하다면 기타 당국의 자문을 거친 후 2항에서 제시된 기준에 입각해 공동체 세관 영토에 위치한 어떠한 경제 운영자에 대해서도 ‘공인 경제 운영자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공인 경제 운영자는 안전 및 안보에 관한 세관 통제와 관련하여 원활화(facilitation)와/혹은 세관 법규에 의해 제공되는 간소화(simplification)의 혜택을 받는다. 공인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세관통제를 침해함없이 2항에서 정한 규칙과 조건에 따라 모든 회원국의 세관 당국에 의해서 인정된다. 세관 당국은 공인경제운영자 지위에 대한 인정에 기초하고, 공동체 세관 법률

에 요구하는 특정 형태의 간소화에 관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그 경제운영자에 대하여 간소화의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2. 공인된 경제 운영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에는 다음이 있다.

- 세관 요구사항에 대한 적절한 준수 기록
- 적절한 세관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상업적 기록과 필요한 경우 운송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체계
- 재정 건전성(financial solvency)
- 적절한 안보 및 안전 기준

다음의 규칙을 결정하는 데는 위원회 절차가 사용된다.

- 공인 경제 운영자 지위 부여
- 간소화 이용 자격 부여
- 어떠한 세관 당국이 이러한 지위와 인증 부여 권한을 가지는 가 하는 점
- 안보 및 안전 관련 세관 통제에 있어 공통 리스크 관리 규칙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편의성의 종류와 범위
- 여타 세관 당국과의 자문 및 정보 제공 또한 본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 인증은 한 국가나 그 이상의 회원국으로 제한될 수 있다.
- 공인 경제 운영자의 지위는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 공동체에서 정한 요구사항들이 특별한 범주의 공인경제운영자의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다. 특히 국제적 합의가 있을 때 그러하다.

3.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3조

1. 세관 당국은 발효 중인 규정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에 이동되는 상품의 진입, 진출, 운송, 이전, 최종 사용 및 공동체 지위를 갖지 못한 상품 존재에 대한 세관 규칙과 기타 법령이 정확하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공동체 법률의 정확한 적용을 목적으로 한 세관 통제는 이에 대해 국제적합의가 이루어지면 제3국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2. 임의 점검(spot-check)과 달리 세관 통제는 자동화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위험분

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관통제는 국가적, 공동체적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제적 수준의 기준을 바탕으로 위험요소를 식별·계량화하고 그 위험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들을 개발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위원회 절차는 공동 리스크 관리 구조를 결정하고 공통 기준 및 우선 통제지역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회원국들은 위원회와 함께 리스크 관리 수행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한다.

3. 통제가 세관 당국 이외의 당국에 의해 수행된다 해도 세관 당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동시에 동일 지역에서 실시되도록 한다.
4. 본 규칙에서 제공된 통제의 측면에서 세관 당국과 수의사와 경찰 등 관련 당국은 공동체 세관 영토와 제3국간의 재화의 진입, 진출, 통과, 이전, 최종용도 및 공동체 지위를 갖지 아니하는 재화의 존재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거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의 세관당국이나 위원회에 송신할 수 있다. 제 3국의 세관 당국이나 기타 조직(예를 들면 정보기관)으로의 기밀 자료의 송신은 국제적 협약의 틀 내에서만, 그리고 정보보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 특히 개인 정보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가 1995년 10월 24일 공표한 지침(Directive) 95/46/EC와 공동체 기구 및 단체에 의한 개인 자료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유럽의회와 각료 이사회의 2000년 12월 18일의 Regulation(EC) NO45/2001이 존중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4.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5조

특성상 기밀이거나 기밀의 조건하에 제공된 모든 정보는 보안 전문가의 책임 하에서만 처리된다. 정보를 제공한 개인이나 당국의 명시적인 허용없이 관련 당국은 이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단 정보교환은 관계 당국이 발효 중인 규정에 따라, 특히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요구될 때에는 허용된다. 어떠한 정보의 발표나 교환도 발효 중인 정보보호 규정, 특히 Directive 95/46/EC와 Regulation(EC) No 45/2001를 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

5. 제16조의 '세관 당국에 의한 통제'는 '세관 통제'(customs controls)로 대체된다.

6. 다음 조항들은 제3편의 제1장 내에 삽입된다.

제36조 a항

1. 공동체 세관 구역에 들어온 상품들은, 영토 내에 머무르지 않고 영해나 영공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식 신고서(summary declaration)를 해야 한다.
2. 약식 신고서는 진입 세관 사무소에 제출된다. 세관 당국은 다른 세관 사무소가 진입 사무소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송신하거나 진입 사무소가 전자적으로 필요한 특정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사무소에 약식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약식 신고서 제출 대신에 경제 운영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의 약식 신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통고(notification) 제출을 받아들일 수 있다.
3. 약식 신고서는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내로 이송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4. 위원회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사용된다.
 -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내로 진입하기 전에 약식 신고서가 접수되어야 하는 기한
 - 첫 번째 항에서 언급된 기한의 예외나 변경에 대한 규칙
 - 약식 신고서에 대한 요구가 면제되거나 수정되는 조건 이상의 조항들은 상품 이동, 수송 방식, 경제 운영자와 관련한 특정의 환경이나 형태에 따라 결정되며, 국제적 합의에 따라 특별한 안보 협정이 있을 때 설정된다.

제36조 b항

1. 주로 안보와 안전을 위한 세관 통제의 적절한 적용과 위험분석을 위해 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국제 기준과 상관행 등을 이용하여, 약식신고서의 공통 내용과 형식을 설정하는데 위원회 절차가 이용된다.
2. 약식 신고는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된다. 필요한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상업적 정보, 항만 또는 운송 정보(commercial, port or transport information)가 이용될 수 있다. 세관 당국은 특별한 경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한 약식 신고서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문서로 된 약식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3. 약식 신고는 상품을 가지고 오거나 상품의 공동체 세관 영토 내로의 진입에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해 제출되어야 한다.
4. 3항에서 명시된 자에 부과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자들이 약식신고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a) 3항에 언급된 자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
 - (b) 문제의 상품을 해당 세관에 제출할 수 있거나 제출한 자
 - (c) 3항에 언급되었거나 (a) 혹은 (b)의 자를 대리하는 자
5. 3항과 4항에 언급된 자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자신의 요구에 의해 약식 신고의 하나 이상의 사항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세관당국이 다음 사항을 실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 (a) 당국이 상품을 검사할 의도가 있다고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했을 때
 - (b) 당국이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 (c) 당국이 상품의 제거(removal)를 허용했을 때

제36조 c항

1. 진입 세관 사무소는 제36조 a의 3항이나 4항에 기술된 기한 만료 전에 세관 신고가 제출된 상품에 대해서 약식 신고서 제출을 면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세관 신고는 최소한 약식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하며, 제63조에 의거해 세관 신고로 인지될 때까지 약식 신고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세관 당국은 진입 세관 사무소와 다른 수입 세관 사무소에 세관 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데, 이는 당 사무소가 진입 사무소에 즉각적으로 정보를 송신하거나 진입 사무소가 전자적으로 필요한 특정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세관 신고가 정보처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채 제출되면 제출된 정보에 대해서 세관 당국은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작성된 세관 신고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7. 제37조 (1)에서 '세관 당국에 의한 통제'는 '세관 통제'로 변경되고, 제38조 3의 '세관 당국의 통제에 의한' 역시 '세관 통제에 의해'로 대체된다.
8. 제38조 5는 다음과 같이 교체된다.
5. 1항부터 4항까지, 36a에서부터 36c까지, 그리고 39조에서 53조까지는 공동체 세관 영토의 두 지점을 바다나 공중을 통하여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공동체 세관 영토를 이탈하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 이는 상품의 운송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에 머무르지 않는 직항로, 정기적인 항로와 해상수송 서비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9. 제40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40조

공동체 세관 영토에 들어오는 상품은 이를 가져오는 자, 혹은 경우에 따라 운송 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단 세관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단지 수송의 목적으로 영토의 바다나 하늘을 지나가는 상품은 제외된다. 상품을 제출하는 자는 이미 제출된 약식 신고나 세관 신고를 참조해야 한다.

10. 제3편 제3장은 제목이 '세관에 제출된 상품의 처분(unloading)'으로 변경한다.

11. 제43, 44, 45조는 삭제된다.

12. 제170조 2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2. 상품은 세관 당국에 제출되고 다음의 세관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상품이 자유지역지대(free zone)나 면세 창고(free warehouse)에 들어가더라도 그 상품이 하역된 세관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 문제의 세관 절차가 상품 제출의 무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상품 제출이 필요 없다.

(b) 수입관세의 환급이나 면제가 허용된다는 결정에 근거하여 상품은 자유무역지대나 면세창고에 들어간다.

(c) 상품은 제166조 b항에서 언급된 조치에 따를 자격을 취득한다.

(d) 상품은 공동체 세관 영토 외부에서 직접 자유지역 혹은 면세 창고로 들어간다.

13. 제176조 2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2. 상품이 자유지역 내에서 환적되면 이와 관련된 기록은 세관 당국의 책임 하에 둔다. 환적 관련 단기적인 상품 저장은 이러한 활동의 온전한 일부(integral part)로 간주된다. 공동체 세관 영토 외부에서 직접 자유무역지대로, 혹은 자유무역지대에서 공동체 세관 영토로 직접 이동하는 상품의 경우 필요하다면 제36조 a항에서 c항까지, 제182조 a항에서 d항까지에 따른 약식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14. 제181조는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제181조

세관 당국은 수출 및 해외 가공, 재수출, 중단된 절차(suspensive procedures), 내부 통과 절차 등과 관련한 절차를 만족시켜야 하며, 상품이 자유지역이나 면세 창고로부터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지점에서도 제5편의 조항들은 존중되어야 한다.

15. 제 182조 (3) 첫 번째 문장, '재수출 혹은'은 삭제된다.

16. 제5편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삽입된다.

제182조 a항

1.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들은 영토 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관 영토의 바다나 하늘을 단순히 통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 신고서가 요구되지 않는 곳에서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위원회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갈 때 세관 신고서 혹은 약식 신고서가 수출 세관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는 기한
 - 상기 기한의 예외와 변형에 대한 규칙
 - 약식 신고가 면제되거나 수용되는 조건
 - 공동체 세관 영토를 벗어나는 상품이 세관 신고서나 약식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나 그 조건이상의 조항들은 상품 이동과 수송 방식, 경제 운영자와 관련한 특정의 환경이나 형태에 따라, 그리고 국제적 합의에 의한 특별한 안보 협정이 있을 때 이에 따라 설정된다.

제182조 b항

1. 공동체 세관 영역을 벗어나는 상품이 세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되는 세관 신고서를 필요로 하는 세관 승인 처리와 이용 절차에 배정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가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수출세관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수출 세관 사무소가 진출 세관 사무소와 다를 경우 수출 세관 사무소는 진출 세관 사무소에 즉각 정보를 송신하거나 진출 세관 사무소가 관련된 사항을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세관 신고서는 최소한 제182조 d항 (1)에 언급된 약식 신고서가 요구하는 특정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4. 세관 신고서가 정보처리 기술 이외의 방식으로 작성되면 세관 당국은이 정보에 대해서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한 세관 신고서에 적용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를 적용해야 한다.

제182조 c항

1. 공동체 세관 영역을 벗어나는 상품이 세관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되는 세관 신

고서를 필요로 하는 세관 승인 처리 및 이용 절차에 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이 공동체 세관 영토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약식 신고서가 출구 세관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2. 세관 당국은 다른 세관 사무소에 약식 신고가 제출되는 것을 허용할 수다. 이는 당 사무소가 출구 세관 사무소에 즉각 정보를 송신하거나 출구세관 사무소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 한한다.
3. 세관 당국은 경제 운영자의 컴퓨터 시스템 내 약식 신고 데이터에의 접근과 통고(notification) 제출을 약식 신고서 대신 허용할 수 있다.

제182조 d항

1. 주로 안보와 안전을 위한 세관 통제의 적절한 적용과 위험분석을 위해필요한 특정 사항들을 포함하고, 국제 기준과 상사 관행 등을 이용하여,약식신고서의 공통 내용과 형식을 설정하는데 위원회 절차가 이용된다.
2. 약식 신고는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된다. 필요한 특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건 하에 상업적 정보, 항만 또는 운송에 대한 정보(commercial, port or transport information)가 이용될 수 있다.세관 당국은 특별한 경우 정보처리 기술을 이용해 작성한 약식 신고서에서 적용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문서로 된 약식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3. 약식 신고서는 다음의 자에 의해서 제출되어야 한다.
 - (a) 상품을 공동체 세관 영토의 밖으로부터 가지고 나가거나 상품의 운송에 책임이 있는 자
 - (b) 문제의 상품을 해당 세관에 제출할 수 있거나 제출한 자
 - (c) (a)나 (b)에서 언급된 자를 대리하는 자
4. 3항에서 언급된 자는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자신의 요구에 의해 약식 신고의 하나 이상의 사항을 수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세관 당국이 다음 사항을 실시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다. 당국이 상 (a) 품을 검사할 의도가 있다고 약식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했을 때
 - (b) 당국이 특정 사항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 (c) 당국이 상품의 제거(removal)를 허용했을 때

제2조

본 규정은 EU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에 게재된 이후 7일째 발효된다.

본 규정의 제5조 a항 2, 제13조 2의 2항, 제36조 a항 4, 제36조 b항 1, 제182조 a항 2와 제182조 d항 은 2005년 5월 11일 이후에 적용된다. 다른 모든 조항들은 실행조항들이 이 조의 2항에서 언급된 조항들에 기초하여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적용된다. 단 제13조, 제36조 a항, b항, c항,

제182조 b항, c항, d항에 기술된 전자 신고,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동화시스템, 진입, 수입, 수출, 진출 세관 사무소 상호간 자료의 전자적 교환은 이들 조항이 적용된 이후 3년 후에 실행된다. 이들 조항이 적용될 수 있게 된 지 된 후 2년 이내에 위원회는 회원국들로부터 전자 신고, 리스크 관리 이행 자동화 시스템, 세관 사무소 간 자료전자 교환과 관련한 3년 기간 연장 요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유럽 각료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3항에서 언급한 3년 기한의 연장을 제안해야 한다.

부록 II. 우리나라 수출업체 AEO 공인 현황

연번	업체명	업체영문명	비고
1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	AMKOR TECHNOLOGY KOREA	
2	삼성전자(주)	SAMSUNG ELECTRONICS CO. LTD.	
3	코오롱인더스트리(주)	KOLON INDUSTRIES, INC.	
4	(주)다산네트웍스	DASAN NETWORKS, INC.	
5	(주)하이닉스반도체	HYNIX SEMICONDUCTOR	
6	엘지전자(주)	LG Electronics Inc.	
7	삼성전기(주)	SAMSUNG ELECTRO-MECHANICS CO. LTD	
8	삼성에스디아이(주)	SAMSUNG SDI CO., LTD.	
9	두산인프라코어(주)	Doosan Infracore Co., Ltd.	
10	한국지엠주식회사	GM KOREA COMPANY	
11	코오롱글로벌(주)	KOLON GLOTECH, INC.	
12	현대자동차(주)	HYUNDAI MOTOR COMPANY	
13	기아자동차(주)	KIA MOTOR COMPANY	
14	현대중공업(주)	HYUNDAI HEAVY INDUSTRIES	
15	에이에스이코리아	ASE KOREA INC.	
16	노벨리스코리아(주)	NovelisKorealtd.	
17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LG DISPLAY	
18	한국후지제록스(주)	FUJI XEROX KOREA CO., LTD.	
19	(유)스태츠칩팩코리아	STATSCHIPPAC KOREA	
20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CANONKOREABUSINESSSOLUTIONSINC.	
21	삼성테크윈(주)	SAMSUNGTECHWINCO., LTD.	
22	(주)삼양사	SAMYANGCORPORATION	
23	(주)삼양제넥스	SAMYANG GENEX CORPORATION	
24	삼남석유화학(주)	SAMNAM PETROCHEMICAL CO., LTD.	
25	(주)LG화학	LGCHEM., LTD.	
26	유한킴벌리(주)	YUHAN-KIMBERLY	
27	한국아이비엠 주식회사	IBM KOREA, INC.	
28	(주)한독약품	HANDOK PHARMACEUTICALS CO., LTD.	
29	한라공조(주)	HALLA CLIMATE CONTROL CORP.	

연번	업체명	업체영문명	비고
30	현대모비스	HYUNDAIMOBIS	
31	(유)듀폰	DUPONT (KOREA) INC.	
32	도레이케미칼	TORAY CHEMICAL KOREA INC.	
33	엘에스전선(주)	LS CABLE	
34	(주)농심	NONGSHIM CO., LTD.	
35	(주)아모레퍼시픽	AMOREPACIFIC	
36	넥센타이어(주)	NEXEN TIRE CORPORATION	
37	대상(주)	DAESANG CORP.	
38	르노삼성자동차(주)	RENAULT SAMSUNG MOTORS CO., LTD.	
39	삼성물산(주)	SAMSUNG C&T	
40	(주)동원에프엔비	DONGWONF&BCO., LTD.	
41	한국 쓰리엠	3M KOREA LTD.	
42	한국보쉬디젤유한회사	RobertBoschKoreaDieselLtd.	
43	한국쓰리엠 보건안전	3M KOREA HEALTH & SAFETY LTD.	
44	한국쓰리엠 하이테크	3MKOREAHIGHTECHLTD.	
45	도레이첨단소재(주)	TORAY ADVANCED MATERIALS KOREA INC.	
46	볼보그룹코리아(주)	VOLVO GROUP KOREA CO., LTD.	
47	국도화학(주)	KUKDO CHEMICAL CO., LTD.	
48	현대하이스코(주)	HYUNDAI HYSKO CO., LTD.	
49	자화전자(주)	JAHWA ELECTRONICS CO., LTD.	
50	네오피델리티(주)	NEOFIDELITY, INC.	
51	한국바스프(주)	BASF COMPANY LTD.	
52	삼성중공업(주)	SAMSUNG HEAVY INDUSTRIES CO., LTD.	
53	현대제철(주)	HYUNDAI STEEL COMPANY	
54	현대로템(주)	HYUNDAI ROTEM COMPANY	
55	삼성코닝정밀소재(주)	SAMUNGCORININGPRECISIONMATERIALS	
56	(주)아이리버	IRIVER LTD.	
57	(주)풍산	POONGSAN CORPORATION	
58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조(주)	BRITISH AMERICAN TOBACCO KOREA	
59	삼성토탈(주)	SAMUNGTOTAL PETROCHEMICALS CO., LTD.	
60	에스케이케미칼(주)	SK CHEMICALS	
61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주)	FAIRCHILD KOREA SEMICONDUCTOR LTD	

연번	업체명	업체영문명	비고
62	(주)피엠타테크	PMRTECHCO., LTD.	
63	(주)구영테크	GUYOUNGTECH CO., LTD	
64	(주)우주일렉트로닉스	UJUELECTRONICS	
65	오리온엔지니어드카본즈(주)	ORION ENGINEERED CARBONS CO., LTD.	
66	STX메탈(주)	STXMETALCO., LTD.	
67	엠이엠씨코리아(주)	MEMC KOREA COMPANY	
68	한국지이초음파(유)	GEULTRASOUNDKOREA, LTD	
69	(주)광진기계	KWANGJIN MACHINE	
70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SAMT CO., LTD.	
71	(주)휴비스	HUVIS	
72	(주)비에스이	BSE CO., LTD.	
73	씨제이프레시웨이 주식회사	CJ FRESHWAY CORPORATION	
74	삼양화성주식회사	Samyang kasei CO., LTD	
75	대구텍 유한회사	TaeguTec Ltd.	
76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주)	KOREA ENGINEERING PLASTICS CO., LTD.	
77	삼성디스플레이(주)	SAMUNGDISPLAYCo., Ltd.	
78	(주)대한항공	Korean Air Lines, Co., Ltd.	
79	여천NCC(주)	YEOCHUNNCCC Co., Ltd.	
80	엘지에릭슨(주)	LG-EricssonCo., Ltd.	
81	(주)팬택	PANTECHCO., LTD.	
82	머크어드밴스드테크놀로지스주식회사	MerckAdvancedTechnologiesLtd.	
83	현대글로벌비스주식회사	HYUNDAIGLOVIS	
84	금호피앤비화학(주)	Kumho P&B Chemicals, Inc.	
85	한국유미코아(유)	Umicore Korea Limited	
86	희성금속(주)	HEESUNG METAL LTD.	
87	주식회사 유니드	UNID CO. LTD.	
88	(주)동진세미켄	DONGJIN SEMICHEM CO, LTD.	
89	유한회사랩코리아	LAPPKOREALLC.	
90	인천화학(주)	INCHEONCHEMICALCO., LTD	
91	티제이미디어주식회사	TJMEDIACO., LTD.	
92	주식회사인트레이딩	INtrading&GLCO., LTD.	
93	주식회사포스코	POSCO	
94	(주)셀트리온	CELLTRION, INC.	
95	(주)휴닉스소재	PHOENIX MATERIALS.	

연번	업체명	업체영문명	비고
96	스마트전자(주)	SMART ELECTRONICS INC.	
97	두림로보틱스 (주)	DOOLIM ROBOTICS CO., LTD	
98	(주)기산텔레콤	KISAN TELECOM CO., LTD	
99	씨앤케이프로팩(주)	C&KPROPAC	
100	아진산업주식회사	AJININDUSTRIALCO., LTD.	
101	(주)우신산업	WOOSHININDUSTRIALCO., LTD.	
102	(주)유니지오코리아	UnigioKoreaCo., Ltd	
103	주식회사케이원전자	K-WONElectronicSCO., Ltd.	
104	코리아에프티(주)	KOREAFUEL-TEHCORPORATION	
105	제일모직 주식회사	CHEIL INDUSTRIES INC.	
106	한국하니웰(주)	Honeywell Co., Ltd.	
107	주식회사경신	KYUNGSHINCORP.	
108	다산기공(주)	DASANMACHINERIESCO., LTD.	
109	제이디미디어주식회사	JD-MEDIACO., LTD.	
110	(주)필룩스	FEELUX	
111	한국타이어(주)	HANKOOK TIRE CO., LTD.	
112	극동제연공업(주)	KUKDONG JEYEN CO., LTD	
113	(주)나스켄	NASCHEM CO., LTD.	
114	에스피반도체통신(주)	SP Semiconductor & Communication	
115	주식회사케이티앤씨	KT&C CO. LTD	
116	한일이화(주)	HANILE-HWACO., LTD.	
117	대덕전자(주)	Daeduck Electronics	
118	(주)대우인터내셔널	DaewooInternationalCorporation	
119	대우조선해양(주)	DaewooShipbuilding & MarineEngineering Co., Ltd.	
120	세종공업(주)	SEJONG INDUSTRIAL CO., LTD.	
121	한국항공우주산업(주)	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	
122	엘지이노텍(주)	LG INNOTEK., CO LTD	2014.04.15 공인
123	(주)대한메탈	DAEHAN METAL CO., LTD.	2014.04.15 공인
124	대한화인세라믹(주)	KOREA FINE CERAMIC CO., LTD	2014.04.15 공인
125	(주)성진포머	SUNGJIN FO-MA INC.	2014.04.15 공인
126	신흥에스이씨(주)	SHIN HEUNG ENERGY&ELECTRONICS CO., LTD.	2014.04.15 공인
127	(주)우성아이비	WOOSUNG I.B. CO., LTD	2014.04.15 공인
128	(주)캐림코리아	CARIM KOREA CO., LTD	2014.04.15 공인

부록 Ⅲ. 자체평가표(S/A) 양식

기준 (대)	기준 (소)	번호	부호	기준	평가요소		자체평가 점수			
					문서화	실행	N/A	0	1	2
법규 준수	법규 준수	1.1.1.1	1A1	<p>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75조 각호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p> <p>▶ 자체평가 근거(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p>			N/A			
법규 준수	법규 준수	1.1.2.1	1A2	<p>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268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p> <p>▶ 자체평가 근거(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p>						
법규 준수	법규 준수	1.1.3.1	1A3	<p>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영 제259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벌칙조항 중 징역형이 규정된 조항에 따라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 종료 또는 벌금형 선고 후 2년이 경과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어야 한다.</p> <p>▶ 자체평가 근거(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p>						

기준 (대)	기준 (소)	번호	부호	기준	평가요소		자체평가 점수				
					문서화	실행	N/A	0	1	2	3
범규 준수	범규 준수	1.1.4.1	1A4	<p>신청업체와 신청인(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이 관세법제 276조에 따라 벌금형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p> <p>▶ 자체평가 근거(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p>							
범규 준수	범규 준수	1.1.5.1	1A5	<p>신청업체는 통합범규준수도시스템 또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측정된 관세행정 범규준수도가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 자체평가 근거(매뉴얼, 내부지침, 문서, 참고자료 등을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p>							

관세연구 14-02

주요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제도 비교

2014년 9월 23일 인쇄

2014년 9월 30일 발행

저 자 정재호 · 박지우 · 양지영

발행인 옥동석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ISBN 978-89-8191-727-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